

당할 수밖에 없고 죽어 버리면 죽는 수밖에 없는, 극한히 일방적인 이 한계상황에서 인간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간 소와 같이 아무 저항 없이 자신을 폭력 앞에 내맡길 수밖에 없다.

고분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단순한 폭행이나 상해, 협박이나 모욕과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 고분이라는 제도적 폭력은 한계상황에서 벌어지고 일상생활의 폭력은 정당방위상황에서 벌어지기 때문이다.

한계상황의 특징은 일방적이라는 데 있다. 고분하는 자는 고분당하는 자를 일방적으로 단순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고분당하는 자의 주체성은 부인되며 단순한 객체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인간을 단순한 객체로 취급할 때 거기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는 것이다. 그래서 「칸트」의 定命(命)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는 그것이 너 자신이건 타인이건간에 인간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서 존중할 것이며 결코 단순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 왜냐하면 거기에는 인간의 존엄성이 깃들여 있기 때문이다」

拷問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다

고분은 인간을 목적으로서 존중하지 않고 단순한 수단으로 다루는 행위양태이다. 거기에서 침해되는 핵심적인 가치가 생명, 신체, 명예와 같은 객관적 실존조건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주관적 실존조건이다. 그래서 고분을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범죄」라고 하는 것이 적의부이다.

拷問이라는 제도적 폭력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고분이라는 이 제도적 폭력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국제 엠네스티의 보고서는 「현재 고분을 그치게 할 효과적인 방법은 거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스스로 인간임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인류는 그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는 노력을 포기할 수 없다. 우리는 엠네스티선언이 제시하고 있는 방법을 재확인하고 그 실현의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拷問의 금지는 정치적 책임

첫째 「인류의 양심에 부합하는 진해를 표명」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권선언이나 헌법에 고분폐지의 규정을 설정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이미 되어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5조는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고분을 받아서는 안되며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고 비인간적이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천명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 헌법 제11조2항도 「모든 국민은 고분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지 아니한다」고 인명하고 있다. 고분금지 규정을 아직 헌법에 설치하지 못한 나라는 국제법의 규정인 세계인권선언 제5조를 수용할 수밖에 없겠으나 각 나라의 헌

인간제상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범죄만큼 더 큰 죄는 없다. 그것은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마지막 근거를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을 「人道에 反하는 죄」라고도 한다. 죄에는 경중이 있다. 살인, 강도, 방화의 그 어느 죄도 그 죄에 있어서 인도에 반하는 죄만큼 무겁지는 않다. 인도에 반하는 죄는 인간을 비인간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이 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까지도 비인간으로 만든다. 그래서 엠네스티 선언은 고분은 고문하는 자를 「야수화」한다고 말한다.

고분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짐승의 행위에 없는 것이다. 고분은 결코 인간의 범죄일 수 없고 그것은 짐승의 범죄이다.

오늘의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범죄가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컬하다. 인류의 양심과 이성인 쌓아 올린 문화와 도덕은 야만으로 되돌아가는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 인간이 야만으로 환원되는 역사를 우리는 생각할 수 없다.

고분폐지운동의 파토스와 에토스는 분명하다. 인간의 세상을 만들 것인가 짐승의 세상을 만들 것인가이다. 양심과 이성과 문화와 도덕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 것인가, 獸心과 악마와 야만이 난무하는 야만세계를 만들 것인가이다. 그래서 엠네스티선언은 「인류의 양심에 부합하는 진해를 표명하고 이러한 악을 근절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고분폐지를 위한 투쟁은 인류의 죄를 앞에 두고 있는 것이며 그 죄를 질명시키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법에 고분금지 규정을 마련하여 인류의 양심에 부합하는 진해를 제각기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모든 정부가 고분을 금지하는 국내법과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범죄국가적 헌법제도, 정치적윤리를 화림함으로써 가능하다. 권력분립제도, 헌법재판제도, 언론의 자유와 비판의 자유 등을 통한 국가 권력의 통제와 감시에 의하여 행하여질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헌법의 수호자는 국민이다. 국민은 사회계약으로서의 헌법분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의 여부를 감시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가 헌법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민은 헌법의 수호자로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것은 우선 「법치 책임」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책임」이다. 「정치적 책임」은 정치논리에 바탕하고 있다. 정치권력 책임지는 자는 국민 앞에서 헌법의 준수를 서약한 자이다. 대통령중심제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그 자기책임에 있어서는 내각이다. 헌법준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내각은 대통령의 경우는 타해에 의한 파면일 것이고 내각의 경우는 총사퇴일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로 하여금 고분금지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고분을 한 국가 관리는 헌법 제125조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우리 헌법 제125조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선부서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직사피의자 또는 기타 시위에 대하여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서도 고분행위의 근절이 어렵다고 보아, 국민의 대표자인 임명부는 1983년 특정법칙가중치법 제4조의 2에 고분을 하여 사람을 처사케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처사케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

고분정찰관은 고분을 할 때 형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처벌을 자오하고 해야 한다. 고분정찰관의 고분이 근절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5년, 10년, 또는 무기를 자오하고도 고분할 수 있을 만큼 용기있는 정찰관은 아마도 찾아 보기 어려울 것이다. 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고분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형사책임은 직접 고문을 한 자뿐만 아니라 그 고문을 지시한 자도 저야 한다. 고문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자 또는 고분하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지지하지 아니한 상관은 고분죄의 작위 및 부작위의 간접정범이다. 고분정찰관의 상관은 정치적 책임이나 행정적 책임만 지는 것이 아니라 형사적 책임도 함께 저야 한다. 그는 형법상의 공범이 되기 때문이다.

투쟁만이拷問을 근절한다

세계 「도덕적, 정치적, 종교적 및 직업상의 책무를 가진 개인사 및 조직들이 전세계적인 고분폐지운동에 대하여 능동적인 지도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엠네스티선인의 이 마지막 요청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고문을 인간 세상에서 몰아내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으로 만들고 그 제도를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칸트」는 그의 「영구평화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국가 또는 국가조직의 문제는,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것같이 들리기는 하지만, 악마의 나라의 국민들조차도 그들이 최소한 悟性만 가지고 있다면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문제는 인간세상에서는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문제는 인간을 도덕적으로 개선하는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자인의 기계조직을 개조하는 문제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법치국가의 제도를 헌법으로 만들고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인간의 이성이 발명한 가장 위대한 창작품인 그 법치국가의 헌법제도를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 다만 그것을 국가가 준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문제이다. 국가가 헌법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제도는 아무런 실효성도 발휘하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의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이며, 사람을 지켜 주는 울타리 구실을 해내지 못한다.

고문을 폐지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국가권력을 헌법에 구속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헌법을 준수하면

왜냐하면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고분을 근절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부분에 속하기 때문이고,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기본권은 수세기에 걸쳐 인류의 양심과 이성을 대변하는 지성들의 투쟁의 산물로써 얻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인권은 하늘이 준 것이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 인간이다. 투쟁없이 인권은 소유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인권의 투쟁 역사가 잘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그 투쟁은 오랜 세월이 걸리는 하였지만 실패하지 않았다. 인류의 양심과 이성이 사라지지 아니하는 한 인간이 인간이고자 하는 욕구는 사라질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은 기어이 고문에 의하여 짓밟힌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고 말 것이다.

인류의 장래를 비관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관할 수만은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세상이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투쟁하면 빨리 올 것이고 투쟁 안 하면 늦게 올 뿐이지 결코 영원히 안 올 수는 없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하늘이 준 그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는 한 인간성을 찾는 그의 본능을 영원히 잠재울 수는 없을 것이다. 기대한 리바이던의 폭력 앞에 하나의 인간은 무력하기 힘들 데 없다. 그러나 그 기억할 수 없는 엄청난 국가의 힘도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며, 그것을 사용하는 것도 사람이며, 그것을 길들이고 통제하는 것도 사람이이다.

제도는 사람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람이 제도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 된다. 이 방법 이외에 달리 뾰족한 방법은 없다. 그러나 이 방법을 실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즉 국가가 헌법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그것을 준수하도록 만드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다.

고문이 헌법상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뒤사리 사라지지 아니하는 소이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엠네스티선인은 「도덕적, 정치적, 종교적 및 직업상의 책무를 가진 개인사 및 조직들이 고분폐지운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헌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국가를 지키게끔 만드는 유일무이한 최선의 방법이기에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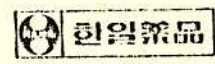
고분폐지운동은 우리 모든 「인간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한다 함은 이미 위에서 지적된 바이다. 그리고 「인간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의무」는 고분하는 자도 마땅히 저야 할 의무이다. 왜냐하면 고분하는 자도 인간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낮을 가지고 있는 이성의 의무로부터 어느 누구도 면할 수 없다. 인간성의 존중에 대하여 그도 의무를 저야 할 「사람」이기 때문이다. □

복용하고 계십니까?

간장약 포로헤파롬-골드

- ★간해독
- ★지방간제기
- ★간기능활성
- ★소화촉진
- ★혈액순환촉진

5중 효과의 종합건강약
포로헤파롬-골드
 표준소매가격 : 100원 9,900원





② 특별기회 위한 放道問拷

르뵈

拷問告發시민운동

文 明 豪

(東亞日報新東亞部記者)

꿈이지 않는 拷問是非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2항)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 (중략) :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헌법 제11조 6항)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대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함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형법 제125조)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심할 만한 이유에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

사회의 구현」이라는 국정목표를 무색케 했다.

고문은 저항을 부른다

고문은 저항을 부른다. 고문당할 당사자는 그 당장에는 폭력 앞에 무릎을 꿇지만 마음 속으로는 한없는 분노와 증오심을 키우며, 기회를 보아 이를 폭로한다. 그가 죽과 친지는 고문 사실에 경악하여 관계 기관에 항의하며, 그들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람, 모든 단체, 모든 기관에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호소한다. 고문당한 사람들의 가족끼리는 서로 의지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 준다.

그리고 인권에 관심을 가진 사람, 단체들은 그들의 주장과 호소에 귀를 기울여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 그 주장의 진실성 여부를 가린다. 고문주장이 사실이라는 판단이 서면 행동에 나선다.

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09조)

①형법 제124조, 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형법 제124조, 제125조 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처상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특별법리가중칙별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위에서 열거한 법률 조문들은 고문을 금지하고, 막고, 나아가 없애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이다. 이들 규정에는 유보적인 단서도 없다. 특히 헌법의 제11조 6항과 특가법 제4조의 2는 제5공화국 정부에 의해 신설된 조문들이다. 고문 근절을 위한 제도적 대책이 더욱 강화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5공화국시대에 들어선 이래 지금까지 고문시비는 간담없이 야기되어 왔다. 언론에까지 크게 보도돼 세문을 들끓게 했던 高淑鍾부인사건(82년), 金時勸사건

(82년), 한일합섬 이사 金根祖씨사건(83년) 등은 고문사실이 배설하에 드러난 대표적인 사건들일 뿐이다.

이들 사건 말고도 제5공화국 출범 직후인 1981년 9월의 부산양치소참사건(일명 釜林사건)과 광명가사건(일명 전국민주학생연맹·전국민주노동자연맹사건 또는 학위사건)에서부터 최근의 이른바 「부친경찰서사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건의 당사자들이 조사과정에서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 크고 작은 파문이 일었다. 정부는 무고한 사람을 고문에 살인범으로 조자한 고수종씨사건, 김시훈씨사건과 고문을 받다 숨진 김근조씨사건이 잇달아 터지자 83년 12월 31일 특가법에 제4조의 2를 새로 추가했다. 그러나 그후에도 여전히 정치적인 의미를 지닌 사건들을 중심으로 고문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그중에서도 지난해의 金權泰씨사건과 올해의 부천서사건은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크게 이목을 끌었다. 「민주주의의 도화화」 「정의

反拷問운동이라고도 이름붙일 수 있는 「고문」에 대한 각계의 대응의 김근태씨사건과 부천서사건을 계기로 보다 조직화되었다.

정치적 사건과 「拷問」

성명을 발표해 고문을 규탄하고, 관계기관에 항의시한을 보내며, 때로는 단체의 이름으로 고발장을 내기도 한다. 가족을 대신해 변호사를 선정하고 재판비용을 대신 부담하며, 당사자의 구속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족에 대한 물질적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이들 단체들은 상호 유기적인 연락을 통해 역할을 나누어 맡으며, 힘을 모아 보다 큰 목소리로 항의하고 사건의 내용을 유인물이나 자료집 형태로 정리해 배포하거나 고문사실을 일반에게 알리는 갖가지 집회를 마련하기도 한다.

반고문운동이라고도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러한 활동들은 특히 김근태씨 사건과 부친사건을 계기로 보다 조직화되었고, 보다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인권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단체의 목적 성격 활동 내용에 관계없이 그들의 노력과 인권의 확립이라는 목표를 위해 하나의 틀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싹트고 있는 것이다. 또 「한국인권선언문」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제5공화국 성립 이래의 술한 정치적 사건들 가운데서 고문이 있었다고 주장된 어느 사건의 경우도 그 주장의 진위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일이 없었다.

고문이 있었다고 하는 주장이 나올 경우 설사 실제로는 고문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부당국이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조사해 입증하지 않는 한 고문 사실을 주장하는 측을 납득시키기 어려운 법이다.

최소한의 정의조차 기울이지 않는 채 단순히 없었다고 하는 주장만을 되풀이할 경우 그러한 무성의 자체가 고문사실을 뒷받침하는 방증자료로 배설되기도 한다.

그러나 고숙종 김시훈 김근조씨 사건처럼 일반 형사사건인 경우와는 달리, 정치계 사건들의 경우에는 고문이 있었다고 하는 주장과 고문사실이 있었다고 하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설 뿐이었다.

두 주장들이 합치점을 찾지 못하면 시뒀사이에는 감정의 식연이 자리잡

게 되었다. 더구나 인권의 암흑기인 유신시대에 그랬지만,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정국의 경색이 다소나마 풀리기 시작한 83년 말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주장들이 보도조차 되지 못했었다.

보도가 안되면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지 않는 일반 국민들은 관심조차 가질 수가 없다. 관심을 끌지 못하면 여론화되지 못한다. 고문주장은 자연 많은 경우가 즉 친지와 활동이 위축된 인권단체들 주변에서 힘없는 외침으로 맴돌다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스러져 갔다.

그러나 그들의 기억 속에서조차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가슴 속에 응어리진 한이 풀린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들의 주장이 옳았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시인받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잘못 알았다고 시인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기 전에는 결코 지워질 정리의 것이 아니었다.

인론이 침묵을 칠지하게 강요당하던 시기에 고문이 있었다고 주장된 사건은 물론 인권상황 진전에 관해 조사하고 자료를 모아 정리해오는 일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인권위원회

회와 한국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가 주로 담당했다.

유인물 하나만 만들어도 당국에 불려가 조사를 받던 시절이라 자료로 정리하는 일 자체가 인권운동이라고 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것은 인식 아래 일이었다.

그중에서도 NCC 인권위원회가 매년 인권문제전국협의회와 인권주간에 맞춰 발간해온 자료집들은 이 시기의 인권상황을 파악하는 데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1982년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반도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된 82년도 인권문제전국협의회를 앞두고 NCC 인권위가 발간한 자료집 「복유과 인권」은 「5.17」 이후 그 시점까지의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문서다. NCC가 발간한 자료들 중 보기 드물게 「對外秘」 표시를 해놓은 것이 당시의 상황에서 이같은 자료를 내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국내판 크기에 총 4매 10면으로 이 자료집은 I. 「오늘의 현실과 인권」 II. 「사건사례」 III. 「고문사례」

로 되어 있는데, 「고문사례」에서는 고문사실을 알림으로써 고문을 근절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사례 정리의 취지를 밝히면서 고문이 있었다고 주장한 9건의 사건을 모아 놓았다.

「모든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다. 고문은 바로 이 본성을 파괴할 파괴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악행위이다. 따라서 고문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행위라는 것이 크리스찬의 신앙고백이다. 또한 고문은 고문을 당하는 사람의 본성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고문을 하는 사람의 본성도 파괴한다.

고문이 자행되는 사회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회이다. 그보다 더 타락한 사회는 고문이 자행되는 사실 자체를 알릴 수 없는 사회이다. 고문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그 고문이 자행된 사실을 알지 않으면 안되며 우리 자신항상 이에 대한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이 자료집은 바로 이러한 뜻에서 고문을 근절시키고 이땅에 더 이상의 고문이 없게 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이 자료집에서 정리해놓은 「고문사례」들은 김시훈씨 사건, 고숙종씨 사건, 기태우(중도)씨 사건, 부산미국문화원방화사건, 부산양서조합(부림)사건, 광민사사건, 미스유니버시티회복과음모사건, 김대중씨사건, YWCA 사건 등이다.

제5공화국 초기의 사건들

이 중 일만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기종도씨사건은 기씨가 이른바 평주햇볕회사건에 인부, 82년 3월 23일 전라남도 경천군에 연행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수사를 받고 구속송치돼 교도소에 수감중 사경을 헤매다 전남대 부속병원에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5월 31일 사망한 사건이다.

「복유과 인권」이 진재한 기씨의 부인 박유덕씨의 호소문은, 기씨가 광주사태와 관련해 불순한 인동을 했다는 혐의로 개업법위반죄를 적용받아 1년 2개월간 복역한 후 출감하여 위계양중으로 자가치료를 받았으나, 수과양중에서의 고문과 고도노수감중의 치료방치로 병이 악화된 뒤 수술을 제때에 받지 못해 사망했다고 주장,

△끼씨의 사인 규명 △고문경찰관과 담담교도관 세출처벌 등을 요구했었다.

『복음과 인권』은 부산 미문화원방화 사건 광민사사건 김대중씨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가운데 고문받았음을 주장한 부분을, 부림사건의 경우는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서 중 고문주장 부분들을, 미스유니버스 대회폭파음모사건의 경우엔 피고인 1명의 상고이유서 중 고문주장 부분을 각각 전제했으며, YWCA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그들이 주장한 「고문사실」을 소개했다.

『복음과 인권』이 소개한 이들 사건의 예도 84년 초까지의 사건들 중 82년의 군산 오송회사건, 83년의 서울 아하연합사건 등에서 고문주장이 있었다. 진자의 경우 천주교 진주교구정의 평화위원회가 사건번호요지, 2심 최후진술, 수감자가족 호소문, 우리의 주장(천주교진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등을 담은 『오송회 사건의 진상』이라는 자료집을 만들어 알렸고, 후자의 경우 NCC 인권위가 83년 인권주간자료집 「민생과 인권」에 수사받은 학생들의

수기를 실었다.

오송회사건에 있어서 천주교구정 평위가 재판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우리의 주장」이라는 성명을 내고 자료집까지 만들어내는 등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던 것은 사건관련자 중 2명이 가톨릭신자라는 사실이 한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천주교 천주교구정의 평화위원회가 얼마나 객관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이 같은 주장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와 유사한 주장이 앞서 언급된 몇몇 사건들의 경우에서도 사건관련자나 그 가족 등에 의해 제기되었었다.

새 轉機 된 김근태씨 사건

83년 말부터 정국의 경색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고 인론이 제한된 정도로나마 각종 시국관련 사건을 보도할 수 있게 된 이래, 학생 노동자 등 각계의 민주화운동이 활기를 띠어가면서 경찰과의 마찰이 잦아짐에 따라 경찰의 폭행사실을 주장하는 사례들이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83년까지의 사건들처럼 덩치가 큰 사건들이 없었던 탓인지 고문주장이 크게 부각된 사

건들은 드물었다.

84년 11월 경희대와 연세대 여학생들이 시위를 벌인 혐의로 청량리경찰서와 서대문경찰서에 연행돼 징역 3개월에 성적추방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이 그 가운데 비교적 큰 관심을 모았던 사건이었다.

그밖에 대구택시기사시위 관련구속자(84년 5월) 인하대 김성진군(84.9) 민정당사농성사건 관련구속학생(84.11) 전남 광산군 하남전자 노조간부(85.3)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방용석위원장(85.4) 「1985, 한국미술, 20대의 힘」전 관련자가(85.7) 등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이중 일부가 그때 그때 신문에 단편적으로 보도되는 정도에 그쳤다.

그러다가 85년 9월에 터져나온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전의장 金權泰씨 고문사건은 그동안의 「고문사건」들과는 양상이 다르게 전개되면서 어리가 지면에서 「고문사건」을 마련한 사건이었다. 김근태씨사건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을 전후한 시기의 사회상황을 다소 알아볼 필요가 있다.

며 결국 김근태씨도 그 손길에 당게 되었던 것이다.

김근태씨 구속의 배경

민청련에 대한 당국의 제재는 85년 7월17일 김철이 미문화원농성사건과 관련, 전국학생총연맹 산하 민족통일·민주쟁취·민생해방투쟁위원회(이하 삼민주위)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밝히면서 공식선호가 올랐다. 김철은 이 발표에서 삼민주위를 용공이 적단체로 규정하면서 민청련 및 한국기독교청년회(EYC·NCC 산하단체)와의 연계 여부를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청련 金秉坤상임위원장이 EYC의 黃仁夏총무와 함께 7월11일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 인행대 제시법·국가모독죄로 7월15일 구속되었고, 민청련 이범영집행국장 이 수배되었다. 한편 삼민주위에 관한 수사를 계속한 당국은 8월6일 서울대 학내 유인물 「깃발」과 이화여대 학내 유인물 「이화인론」을 용공유인물로 규정하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결과 유

린해 후일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으로 별도 발표된 서울대 비공개학생조직 민주위에 관계한 文龍植(27) 국사학과 3년 휴학)이 8월28일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연행된다.

문군은 그후 법정과 항소이유서에 수사과정에서의 「고문사실」을 주장한다. 그리고 그 나흘 뒤인 9월2일 민청련 상이위 부위원장 李乙鎬씨가, 4일엔 전의장 김근태씨가 각각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 연행됐으며, 그 후 10월1일부터 금년 3월2일 사이에 모두 6명의 간부들이 같은 곳에 연행되었다.

김근태씨(39)는 4일 연행되기에 앞서 민청련의장직을 물리난지 2주일 후인 8월24일 이미 서울 중부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에 의해 체포돼, 85년 8월10일 있었던 민청련 제5차 총회의 결의문 내용으로 경범죄 처벌법 유언비어날조유죄 조항을 적용받아 8월26일 즉결심판에 회부, 구류 10일을 선고받고 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김씨는 구류가 끝나는 날인 4일 새벽 5시반 이 유치장에서 급바닥에 깔린 것이다.

학생운동 출신자들이 모여 「해방」의 진영이 아직 불투명했던 83년 9월 결성한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은 「5.17」 이후 민주화운동을 공개적으로 표방하고 나선 최초의 단체로서 84, 85년에 걸친 많은 재야단체들의 등장 의 효시가 되었다. 게다가 민청련이 재야 운동권의 전위를 자임하면서 두 재산 회복을 위해서 내세우고 활동함에 따라 출범 직후부터 당국과 심한 마찰을 빚었다.

물론 마찰은 민청련만 겪은 게 아니었으며, 특히 모든 운동권의 앞을 달리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 경우는 더욱 컸다. 85년 5월의 서울 미국문화원 직기농성사건, 대우이페럴사건을 계기로 한 6월의 구로지역인대투쟁 등이 그 전경이었다.

이 두 사건은 84년 이래 시시히 전개돼오다 85년 2·12총선 이후부터 가열일로 달리는 각계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당국의 경계가 크게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재야 운동단체들이 「탄압」이라고 부르는 당국의 조치들이 취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민청련을 대하는 당국의 손길이 한층 거세져왔으

김씨는 9월 7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최대구속기한인 20일을 파 체운 9월 26일 검찰에 송치됐다. 김씨의 부인 卍在謹씨(34)는 그동안 남편의 민회는커녕 소식조차 듣지 못하고 있다. 다가가 이날 검찰에 송치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김철청의 서울지점 공안부가 있는 5층 복도에서 아침부터 기다린 끝에 오후 2시반 김씨를 만날 수 있었다.

인씨는 다음날 아침 10시 이을호씨의 부인 최정순씨 구속자가족 및 민청련 회원 등 30여명과 함께 종로구인 지동 기독교회관의 NCC 인권위인회 사무실에 모여 항의농성을 시작하는 자리에서 "치안본부에서 고문당한 남편의 고통을 호소합니다"라는 호소문을 배포, 남편을 만났을 때 보고 들은 사실을 폭로했다.

26일 오후 2시 30분 김철청 5층 엘리베이터에서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내려오는 남편을 본 순간 반가움과 함께 놀라움으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읍니다. 걸음을 제대로 옮기지 못하는 남편에게 "많이 다쳤느냐?"고 재가 붙었읍니다. 남편은 "경찰이 당했어! 경찰히 당

했어!" 하며 되풀이했읍니다. 9월 4일에 2차레, 5, 6일 각각 1차레, 8일, 11일, 13일, 16일, 20일까지 10여차례 온몸을 뽕뽕 뭉이 놓고 전기고문, 물고문, 고추가루물 먹이기, 소금물 먹이기 등 갖은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을 거의 재우지 않았고, 고문을 한 날은 밤을 주지 않아 꼬박 굶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5시간 내지 7시간씩 고문을 가했고, 나중에는 고문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약해지자 3시간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위 사실은 김철청 5층에서 4층대 기실까지 내려가는 동안 남편이 저에게 진한 것입니다. 대기실에서 남편은 저에게 발뒤꿈치를 보여주었읍니다. 것이거진 그의 발꿈치와 발등은 저의 가슴을 매이지게 했읍니다. 옷을 입고 있지 한일 수 는 없었지만 온몸에도 상처투성이고 특히 발꿈치는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20일 이후 26일까지 치료를 하여 많이 나은 상태가 그 정도이니 그 당시 그는 사경을 헤맸으리라고 생

각합니다.....

폭로의 파문

인씨의 폭로는 즉각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제야에서의 김씨의 위치 텃도 있었겠지만 김씨가 당했다고 주장한 고문 내용이 쉽사리 믿기 어려울 만큼 충격적이었던 것이다. NCC 인권위 사무실에서의 농성은 28일 오후 4시경 끝났고, 민청련은 이날 "고문철폐를 위한 투쟁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와 매를 같이하여 이을호씨, 9월 5일 자수한 진하련 삼민투위 위원장 許仁會군, 문용식군 등의 경우도 저지 않은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이 표면화되어갔다.

이돈명 조준희 홍성우 황인철 김상철 목요상 장기욱 신기하씨 등 8명이 김씨사건의 변호인이 돼, 김씨 신체에 대한 시진 촬영 등의 방법에 의한 검증과 상처부위에 대한 수상원인 및 수상일시의 의학적인 감정을 요구하는 증거보존청구서를 10월 2일 서울 형사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다시 10월 5일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신체검증을 즉시 하여야 하

는 이유를 강조하는 「기일지정에 관한 의견」을 추가로 제출했다. 변호인들은 「의견서」에서 「변호인들에 대한 기일통지 역시 시면의 의할 필요가 없이 변호인들 중 어느 1인에게라도 전화통지를 하면 기대유리 현상이 될 것인 명의의 기일통지영수증서를 작성할 것이며 이에 관한 진차상의 항변을 사전에 포기하는 바입니다」라고까지 덧붙였다. 그러나 서울형사지법 김오수판사는 변호인들의 다급한 심정과 달리 원 청구가 있는 지 열흘 후인 10월 12일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NCC는 10월 4일 정기실행 위원회 회의에서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를 폭력추방기간으로 설정하는 한편, 이날자로 NCC에 접수된 인제근씨의 청원을 심의하고 회장단과 인권위인회에서 이 문제를 전담해 대처해 나가도록 했다.

이날 민주추진협의회도 상임위와 지도위원회의를 열고 「근무행위: 우리 국민과 전 인류의 공적이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 「정부 스스로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고문행

위를 이땅에서 뿌리뽑기 위해 신민당을 비롯한 제야 민주세력과 굳게 연대하여 강력한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을 국민앞에 천명한다」고 밝혔다. 또 민청련 노동자 학생구속자가족 30여명이 NCC 인권위 사무실에서 이날부터 2주간 농성을 벌여가 10일까지 계속했다.

NCC 인권위는 이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위해 10월 5일 기독교장로회총회 총무 김상근목사를 위원장, 김영관목사를 시기, 조승혁 오종일목사와 이우정씨를 위원으로 위촉, 고문대케위인회를 조직했다.

10월 14일엔 NCC 회장단 가맹 6개 교단장 및 총무들이 간담회를 갖고 대폭을 논의, △내무부에 10월 21일까지 고문사실화인 협조요청 △국무총리 업무·내무부장관·민정·신민당 총무 국회 비사위원회 위원장 및 내무위원장 앞으로 항의서와 공개서한 발송 △10월 20, 27일을 고문추방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에 전국 교회에서 고문일 주야 농성을 벌인다는 계획을 세워 이를 실천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에게 보내는 6개 교단장과 총무 및 NCC 회장단 공동

명으로 된 탄원서와 내무부장관에게 보내는 고문화인요청서(고문대케위명의)가 이날자로 발송됐다.

또 국무총리 앞으로 된 항의서가 15일자로 발송됐는데, 이 항의서는 국회의장 국회 내무·비사위원장 내무·법무장관에게도 발송되고 노비켰으며, 28일에는 공개서한이 내무장관에게 발송됐다.

NCC 간담회가 열린 14일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서울 해화동 성당에서 회의와 미사를 갖고 고문 및 민주화운동 탄압에 항의하는 내용의 「오늘의 현실을 보고 호소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또 민청련 지도위원회도 대책회의를 갖고 항의성명을, NYC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 대회가 톨리 학생총연맹 민청련 등 4개 단체가 「민청련 탄압은 민중민주화운동 진해에 대한 탄압이다」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15일엔 문익환목사 등 민청련 간부와 민청련 구속자가족 30여명이 민청련 사무실까지 농성에 들어갔고, 당일로 민주협 간부 20여명이 농성에 합류했으며, 다음날엔 김대중, 김영삼씨가 경찰의 저지를 뿌리치고 민청련

사무실을 방문했다.

共同對策委員의 발족

이처럼 각 단체별로 산발적으로 전개되던 항의 움직임은 「고문 및 용공 조작 지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위)가 결성되면서 이 단체를 중심으로 응집되어갔다. 민주협은 10월 4일자 성명이 한 단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 단체의 결성은 10월 7일 제야 38개 단체 80여명이 NCC 인권위 사무실에 모여 공동대책을 숙의하면서 태동했다.

NCC 고문대책위원회 초청형식으로 10월 17일 NCC 인권위 사무실에서의 간담회에 참석한 제야 대표 45명은 이 자리에서 공동위를 발족시켰다. 그리고 「민주화운동에 대한 고문 수사, 용공조작을 규탄한다」라는 성명이 발표됐다. 공동위는 고문 9명, 공동대표 14명과 신교 33명, 구교 24명, 불교 10명, 구속자가족 12명, 민통련(본부 지부 및 가맹단체) 60명, 민주협 50명, 신민당 국회의원 51명 등 2백 40명의 대책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전 아군이 망라된 것이다.

연에도 오전 9시 대형 스피커 2대를 건물 앞뒤에 설치하여 구호를 외치고 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낭독한 후 오전 10시만 해제식을 갖고 11시 자진 해산했다. 3일간의 농성에는 신민당 민주협 민통련 민청련 관계자 및 성직자 구속자가족 등 20명이 줄곧 자리를 지켰다.

공동위는 그후 11월 29일 성명서를 발표, 11월 18일 민청당 중앙정치연수원 농성사진과 11월 21일 「서울대국민 대토론회」 사진 및 민주협 사무실 연 황농성사진으로 구성된 사람들의 서장을 요구했다.

이이 세계인권선언일인 12월 10일과 김근태씨의 1심 첫 공판이 있는지를 비롯 후인 12월 21일에도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후 국내외의 관심사였던 김근태씨 사진의 공판이 진행되면서 고문사비의 장이 밀정으로 옮겨짐에 따라 공동위의 활동은 한동안 뜸해졌다가, 금년 봄 이래 일련의 사진이 터져 다시 제게 된다.

국내외의 對應

공동위의 활동 이외에도 「고문사

공동위는 10월 19일 민주협 사무실에서 신민당 민주협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고문 및 용공조작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16건의 「고문사진」을 포함한 총 41건의 고문·폭행사태가 발표됐다. 이 자리에는 김영삼이 민주 개헌제 인제군책 등이 참석했고, 김대중 문익환 박형규 송진호씨 등은 가택연금당해 나오지 못했다.

11월 4일에는 NCC 인권위 사무실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 「세계인권단체에 보내는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고문 및 용공조작 지지를 위한 보고대회」를 11월 8일 해화동성당에서 갖겠다고 선언했다. 이 자리에는 미국 대사관과 영국 대사관 참사관이 나와 회견 모습을 지켜보아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8월 저녁 7시로 예정되었던 보고대회는 경찰이 오전 10시부터 성당 출입을 봉쇄하고 미리 성당 안에 들어가 있던 개헌제씨와 구속자가족들을 밖으로 끌어내는가 하면, 김대중 박형규 문익환씨 등 15명의 제야인사들을 가택연금하는 바람에 해화동로

건」들에 대해 국내외에서 전개된 대응 활동들을 남겨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85·10·18 미국부성 대변인이 이례적으로 김근태씨의 이름을 들면서 한국정부의 탄압에 대해 개탄했다.

— 10·20 미국 「뉴욕타임즈」에 김씨 사진이 보도됐고, 뉴욕에서 한국 고문사태를 규탄하는 시명운동이 시작됐다.

— 10·25 신민당이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고문행위진상조사위원회」를 국회에 제출했다.

— 10·25 이을호씨의 부인 최정순씨가 서울지방검찰청에 이씨의 서장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최씨는 이을호씨가 과거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데 연행된 후 다시 발명했다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석방해달라고 탄원했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탄원과 호소 공개질의서 등을 냈고 석방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이씨는 10월 15일 서울시립정신병원에 감정유치된지 근 8개월만인 86년 6월 5일에야 비로소 구

터리 테극당제과점에서 약식으로 진행됐다. 70여명의 참가자들은 약식보고대회가 끝난 후 약 30분간 해화동 로터리에서 항의 가두시위를 벌이고 해산했다.

해화동성당 보고대회가 제대로 치리지 못하자 공동위는 11월 11일 오전 10시 서소문 민주협 사무실에서 다시 보고대회를 가진 후 항의농성에 돌입했다. 문익환 개헌제 박형규 배기완 송진호씨 등 공동위의 일부 고문, 공동대표 및 대책위원들이 민주협 사무실에 있는 진흥빌딩 부근에서 강제기가 조치돼 연금당했고, 김대중 김영삼 고문 최형우 양순직 박영록 김명운 공동대표와 대책위원 일부 및 구속학생 가족 등 1백 50여명이 참가했다. 그러나 오후 7시경부터 경찰이 증원 배치돼 민주협 사무실 출입을 완전히 차단, 신민당 김동영 원내총무 등 현역의원들마저 농성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농성 이틀째인 12일 낮 12시만경에는 농성자 전원이 건물 밖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불렀다. 오후 2시만경에는 핸드마이크를 사용해 옥외방송을 하기도 했다. 사흘째인 13

속 집행정지로 석방될 수 있었다.

— 10·27 진북인권선교회의회가 「최고문·폭력사태를 집하며」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10·30 민청련과 민통련이 민주위 사진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과음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각자 발표했다. 검찰은 29일 81년의 하림사건으로 부역 후 출감한 朴文植씨(28)의 배후조종 아래 문용식군이 주동이 돼 결성한 민주위가 삼민주의 등의 활동을 배후조종해 왔고 10월 25일 기소된 김근태씨를 중심으로 한 민청련이 민주위의 또 다른 배후 역할을 해왔다고 하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었다.

— 10·31 민청련 구속자가족 일동 이 성명서를 발표, 구속된 민청련 간부들에 대한 「고문사실」을 낱낱이 밝히면서 이들의 석방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민청련 회원들과 함께 NCC 인권위 사무실에서 항의농성에 돌입, 11월 4일까지 계속했다.

— 11·3 김근태씨의 네제 형 金國泰씨(48·작가)가 검찰의 10월 29일자 발표내용중 김씨 家乘에 대한 부분이 왜곡·조작되었다고 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 발표했다. 이날 민주인론은

동협의회 민중문화운동협의회 자유실
 천문인협의회 등 3개단체도 고문 및
 수사결과 발표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공동 발표했다.

11.5 한국노동선교협의회가 「민
 주인사에 대한 고문수사 및 용공조작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

11.18 전국목회자들의 평화실천
 협의회 소속 목회자 40여명이 NCC
 인권위 사무실에서 철야기도회를 가
 졌다. 이들은 이태복씨 모친 이정숙
 씨와 인제근씨 등 구속자가 죽들로서부
 터 「고문사례」 보고를 들은 뒤, 고문
 사례집과 고문문제에 관한 공동설교
 문을 제작해 전국교회에 배포하기로
 결의했다.

11.21 NCC 회장단과 가맹 6
 개 교단장들은 「고문추방과 단군전
 진립반대에 대하여」라는 부제가 달
 린 「목회서신」을 전국 교회에 보냈
 다. 목회서신은 「오늘날 한국교회 교
 인의 수는 거의 전인구의 4분의 1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있음에도 고문과 잔혹행위가 자행되
 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추궁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을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관계자
 를 고발까지 한 것은 그린 의미에서
 큰 빈모라고 할 수 있었다.

변협외의 달라집은 85년 총선 직후인
 2월23일 金殿鎬씨(68)가 제33대 회
 장으로 선출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있다. 김희장은 취임 후 「불의
 가 득세할 때 침묵만은 하지 않겠다」
 고 다짐했었다. 김희장 취임 직후인
 85년 3월 변협 인권위원회가 새로 구
 성되었다. 인권위원은 회장이 상임이
 사외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며 현재 25
 명이나 정원 규정은 없다.

새로 구성된 인권위가 활발한 활동
 을 전개하면서 만만찮은 사건은 민정당
 사농성화생사건이었다. 인권위는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고문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자, 담당 변호인들의 보
 고와 공판기록을 검토한 끝에 조사 소
 쟁을 구성, 학생들을 상대로 자체 조
 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를 놓고 인권위는 고발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상임
 이사회는 대한변협 명의의 공식 고발
 을 제기하는 데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회장 명의의 대외
 적인 의사표시를 할 때는 상임이사회

12.8 한국천주교정의 평화위원
 회는 한국천주교 제4회 인권주일 메
 시지를 발표, 인권상황에 개탄과 우
 려를 표명했다. 이 메시지는 김근태
 씨 증거보전신청의 기각과 관련, 다
 음과 같이 법원을 비판했다.

「법과 정의의 수호자로서 그 품위와
 존엄을 유지해야 할 법원은 이제 그
 도덕적 권위를 스스로 포기하여 자
 신을 요식적 기구로 전락시키고 있
 습니다. 고문의 근절에 앞장서기 보
 다 고문사실의 증거보전조치 거부
 함으로써 사실상 고문을 용인, 조
 장하고 있는 인상마저 풍기고 있습
 니다」

12.12 5개 구속자가 추협의회의
 협의체인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가 발
 졌다. 또 연성수 권형택 김희상
 김종복씨 등 구속중인 민청련장부들
 은 민정당중앙정치연수원농성학생들
 이 검찰조사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
 며 이날부터 이에 항의하는 단식을 시
 작, 19일까지 계속했다.

12.24 NCC 고문대책위원회가
 노신영구무총리 앞으로 「김근태씨 등
 에 대한 고문항의 및 내부부장관 인책
 건의」문을 발송.

의 의결을 기차야 하는 변협 규정애
 의 해 고발장은 내지 않았다.

이같은 일이 몇차례 있는 다음 회장
 명의가 아닌 인권위 명의의 의사표시
 일 때는 상임이사회를 기치지 않도록
 조정되었다. 김근태씨사건의 고발을
 인권위 명의로 한 것은 그러한 조정이
 일어난 후의 일이다.

변협 인권위가 김씨사건에 관련해
 고발장을 낸게 35년 11월 20일이고 그
 후 여러차례 수사촉구공문을 보냈으
 나 검찰은 지금까지 조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다. 고소 고발사건의 처
 리착수시한에 관한 명문화된 법규정
 은 없으나, 검찰 내부의 훈시규정은
 3개월 이내에 착수하고 그 기간을 넘
 기게 되는 경우 「3개월 미제」로 분류
 해 매월말에 보고토록 돼 있어 일반적
 인 사건의 경우 검사들이 여간해선 3
 개월을 넘기지 않으려고 신경을 쓰는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것이다.

변협의 업적인 「85인권보고서」

인권위의 업적의 하나로 평가되는
 것이 지난 5월1일자로 발간된 변협
 의 「1985년 인권보고서」다. 대한

12.30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회가 김근태씨 수사 경찰관 8명을 검
 찰총장에 고발했다.

86.1.16 고문당한 경험에 있
 는 개신교 목회자 10여명이 가장 총회
 회의실에 모여 고문근절을 위한 구체
 적인 실천방안으로 김근태씨 공판이
 열리는 법원 부근인 성공회대성당에
 서 매주 목요일 오전 8시반에 기도회
 를 갖기로 결의했다.

1.24 NCC 인권위가 전치안
 본부장 박모씨 등 9명을 서울지점에
 고발.

등보인 辯協의 활동

한편 개별 단체의 대응 가운데 눈에
 돋보인 것이 대한변협의 활동이었다.
 원래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
 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변호사법 제1조①항) 직업이다.
 그러나 세칭 인권변호사들이 각종 인
 권사건의 변론을 맡아 등보인 것은
 것은 오래 되었어도 변협 자체가 정치
 와 연관되는 고문같은 미묘한 인권문
 제에 행동으로 관심을 보인 것은 흔치
 않았다. 변협 인권위원회가 김근태씨

변협사상 최초인이 보고서의 발간은
 85년 10월말 변협이 사회의 결의로 시
 작되었다. 이때는 12월10일 세계인권
 선언일 기념행사로 발간하자는 것이
 있으나, 내부 사정으로 늦춰 이 때 나
 오게 되었다. 처음엔 3천부를 찍었
 다가 나중에 1천부를 추가 인쇄했다.

변협수 강철선 조승형 조영래씨 등
 4명의 인권위 소속 변호사들이 작성
 3위원이 돼 달다. 이 보고서는 제1장
 「1985년의 인권상황」、제2장
 「대한변협의 인권관계 활동자료」、제
 3장 「기타, 인권관계자료」로 돼 있
 다. 이 가운데 제1장 2 「신체의 자
 유와 안전」 가운데 「수사과정에서
 의 고문·폭행 등」중 일부를 소개한
 다.

「:종래에 사회 일각에서는 이같은
 억압적인 수사관행에 대하여 이를
 효율적인 수사목적 달성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하나의 필요
 악으로서 묵인 또는 관용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왔다. 일반 형사사건의
 피의자들, 특히 절도, 강도 등 과립
 처벌 진과, 우범자들에 대하여 중
 중 가해지는 고문은 그들이 사회적
 으로 소외된 소수자의 지위에 처해

있다는 사실과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잠재적 피해자인 일반인들이 품고 있는 적대적 감정 때문에 사회 여론의 관심권 밖에 방치되어 왔다. 또 국가보안법위반 등 용공사건 피해자들이 빈번히 제기하는 수사와 정에서의 고문 등 가혹행위에 관한 주장은 우리나라가 치한 안보적 상황의 특수성 때문에 거의 묵살되어 왔다. 다만 지식인, 학생, 정치인, 종교인 등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고문사례는 매대로 폭로되고 사회적 관심의 초점이 되어 일시적인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나, 널리 일반화된 억압적 수사와 관행에 대한 근본적 반성과 그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아직껏 이디에서도 전개된 바가 없었다고 하여야 옳을 것이다.

수사의 주체이며 인권옹호직무의 담당자이기도 한 검찰은 엄격한 수사지휘를 통하여 정황수사과정에서의 고문·폭행 등 인권유린을 방지할 책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종래 검찰은 이같은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여 왔다. 피의자들이 호소하는 허다한 고문

사태에도 불구하고 그 중 검찰의 직·구적·능동적 수사에 의하여 그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책임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 경우는 거의 예외적이라고 하여도 좋을 정도로 드물다.

한편 법원 역시 종래의 재판실무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고문사실 주장을 받아들여거나 고문으로 인하여 인이진 것으로 의심되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배척함에 있어서 다분히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여 온 것이 있다. 다만, 근래에 이르러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고숙중여인사건, 박상은양살해사건 등을 계기로 하여 적어도 공안사건이 아닌 일반형사사건에 관한 한은 점차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가려는 동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民家協의 치열한 대응

구속자가족들의 대응은 구속자와 그의 한가지로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놓인 사람들의 행동이어서 어느 인사가, 어느 단체보다도 치열하게 전개됐다. 그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문을 비롯하여 구속자관계 일을 알리고 시정을 위해 어떤 장소 어떤 사람이라도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찾아가 만났다. 김근태씨 「고문사건」이 부인인재근씨의 입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는 과정은 그러한 노력들의 단편이다.

구속자가족들은 자신들의 힘을 한 군데로 모아 보다 효과적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 85년 12월 12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약칭 민가협)를 조직했다. 민가협은 기왕에 조직돼 활동중이던 구속학생부모협의회, 구속노동자가족협의회, 구속청년·민주인사가족협의회, 양심수가족협의회(일명 장기수가족협의회)의 협의체로 발족했고, 86년 8월 12일 조직된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가 나중에 합세했다.

민가협은 발족에 즈음하여 성명서를 발표, 모든 양심수의 석방, 고문책임자 처단 등 6개항을 요구했다. 이들은 86년 2월 10일 「민주가족」이라는 회지를 창간했다. 창간호는 문익환목사의 격려사, 창간사, 고문사인의 축시, 민가협 발기문, 부분운동소개관, 미문화원사전 항소심 변호인단

변론요지, 사건일지, 구속자 등의 소식, 성명서 등을 게재했다. 이 회지는 현재 4호까지 발간, 구속자들의 인권상황 및 민가협의 주장 등을 싣고 있다. 금년 5월 8일에는 민가협 광주지부가, 5월 25일에는 대구지부가 발족되었다.

김근태씨 등의 사건에 있어서 민가협 못지않은 당사자는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이었다. 민청련은 사건이 터지면서부터 이를 조직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보고 구속자가족들과 함께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맹렬하게 대응했다. 민가협과 함께 쓰는 서울중구삼각동 합동빌딩 602호 민청련 사무실은 NCC 인권위 사무실과 함께 농성장의 대명사가 되었다.

민청련은 기관지 「민주화의 길」 이외에 85년 12월 18일 소식지 「민청련 구속자소식」을 창간했다. 구속자들의 동정, 공판내용, 민청련사건에 관한 각계의 대응소식 등이 이 소식지를 통해 알리고 전파됐다. 「민청련 구속자소식」은 9월 22일자로 11호에 이르러 있다.

민청련은 또 금년 4월 3일자로 「민청련탄압사건백서」를 발간했다.

4·6배관 정도의 크기에 모두 1백 22명으로 된 이 백서는 특히 92면에 걸친 자료편에서 38편을 이 사건에 있어서의 「고문」에 관한 자증자료 정리에 할애했다.

한편 민주협은 85년 10월 4일의 성명서를 통해 「고문근절을 위한 재야세력과의 공동투쟁」의지를 최후로 밝힘으로써 고문문제에 관해 재야와 범정치권이 인대를 이루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협 소속 신민당 국회의원들이 대기 「고문 및 용공조직 지지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공대위의 비중이 무게를 더하여 이 단체의 고문에 대한 대응회동이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게 되는 데 중요한 몫을 한 것 또한 사실이다.

보임사 사건

86년 들어 주목을 끈 주요 고문사건들은 보임사사건(12월), 「5·3仁川사태」관련구속자사건(5월), 서울노동운동연합사건(5월), 그리고 부천경찰서사건(6월) 등이다.

인」의 대표 高敏大씨(28·연세대 졸) 등 14명이 3월 25일부터 29일 사이에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 인행돼 그 중 12명이 5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처음 이들이 인행되자 가족들은 행방을 전혀 모른 채 사방으로 수소문하다 민가협을 알게 됐고 그 도움으로 23일 이들의 소재를 확인했다. 다음날 오전 가족들은 민가협 회원들과 함께 이곳으로 몰려가 오랜 승강이 끝에 인행된 사람들을 면회할 수 있었다. 전무한 일이었다.

가족들은 30일 호소문을 내 그들의 가족이 29일 오전 11시 현재까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채 불명인행돼 있다며 속히 법적 절차를 밟아 수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25일 인행된 사람들은 이미 29일 오후 영장이 발부되었으며, 가족들은 4월 1일 구속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받고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가족들은 4월 10일 다시 호소문을 냈고, 같은 날자로 민가협과 공동명의로 된 성명서를 발표, 「치안본부는 살인적인 고문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사건의 진상을 공개하라」고 주

장했다.

이 사건은 4월 1일 국회에서 공대 위 대책위원들이 신민당 문정수 송천 영안동선의원 등이 정상 공개를 요구 하는 절의를 함으로써 공식으로 문제 제기가 됐다. 4월 21일 NCC 인권 위와 고문대책위가 내무장관 앞으로 「불법인행 및 고문수사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 이 사건에 대한 공식 심을 밝히면서 구속자 공개면담 허용 을 요구했다.

4월 22일 보인사사건 관련 구속자 가족들과 기청(EYC) 회원 등 30여 명이 NCC 인권위 사무실에서 「고문수사 중지」 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이 농성이 끝나는 24일 NCC 인권위는 고문대책위와 가맹 6 개교당장 회의를 소집하여 사건의 내용을 설명하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29일엔 기독교대학장리회 청년회전 국민합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청년회전 국민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연합회 한국기독교청년회협의회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이 4월 13일의 1차 기도회와 22, 24일의 철야농성에 이은 2차 기도회를 개최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입

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이들의 행동이야말로 기독교 청년들의 당연하고도 분명한 신앙고백」이라고 주장하며 국가보안법 철폐와 14일 즉각 지방 등을 요구했다.

5월 1일 오전 10시 공대위가 기독교회관 대강장에서 공동대표 및 대책 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의 인권유린에 대한 사례보고대회를 개최했다. 보고가 끝난 후 공대위는 「더 이상의 고문과 인권유린은 없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5월 9일엔 NCC 고문대책위가 서울 엠메시터호텔에서 NCC 회장단 및 가맹 6개교당장·총무연석회의를 열어 보인사사건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 검토하고 참석자 공동명의로 이같은 사태의 종지를 요구하는 공헌을 대통령에게 발송하기로 결의했다.

서울勞動運動聯合사건

서울노동운동연합 지도위원 金文洙 씨(35) 등 15명(1명은 나중에 풀려남)의 경우는 「5.3 인천사태」 바로 전날인 5월 2일부터 8일 사이에 연행

로 넘겨진 사실을 알아냈다.

가족들은 다시 시경에서의 후신과 신 끝에 현재 있는 곳이 시경 △△동 분실이라는 사실을 알아내 16일 오후 이곳으로 물러갔으나, 전날 밤 구속 영장이 발부여 결정 후, 유죄판례 분 산수집된 뒤였다. 가족들은 먼저 동 대문서로 찾아가 또한 민송장이를 벌 여 간신히 새 사람을 잠깐 얼굴만 볼 수 있었다.

가족들은 다시 성동경찰서로 옮겨 가 2시간 동안의 항의와 요구 끝에 김문수씨를 면회하는 데 성공했다. 김씨는 담배 3대를 피울 정도의 짧은 시간에 부인 실랑이에게 그들이 당 했다는 「고문」의 내용을 폭로했다. 구속된 시도인 관계자가 가족들은 5월 19일 「노동자·청년·학생·민주인 사에 대한 불법인행·감금·압수·수색 및 고문행위의 정상」을 조사해달 라고 대한민합에 진정했다.

이에 따라 민합 인권위원회는 이날 정오 정례회의에서 전상조사를 의결, 서울지방민회소속 조수 민정수 조송형 강철선민회사를 조사위원으로 지명했다. 위원장인 卜禎洙씨(56)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79년 개입

한 민회사로 김근태씨사건에서도 조사위원장을 맡았던 잘 알려지지 않은 인권변호사. 조사위원들은 5월 21일, 5월 23일 이틀에 걸쳐 1차 조사를 실시, 5월 27일 1차 조사보고서 를 제출했다.

새 변호사는 또 김문수씨의 변호인 자격으로 서울형사지법에 5월 27일 김씨 신체에 대한 검증 및 감정 시행 을 요청하는 내용의 증거보전을 청구 했다. 그러나 서울형사지법 孫正龍 판사는 29일 이 청구를 기각했다. 변호인들은 이에 불복, 6월 2일 서울형사지법에 항고했으나 역시 기각당했다. 대한민합 인권위원회는 6월 13일 조사위원들의 2차 조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이를 토대로 하여 6월 23일 이 사건 수사관계자의 「고문행위」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관계당국에 고 말했다.

여성변호사의 호소

NCC 고문대책위는 5월 30일 오후 2시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개헌, 고문 등의 문제에 관한 비상시 국보고회를 개최, 보인사사건과 시노

됐다. 이들이 연행되자 가족들은 5월 12일 오후 4시 민가협 사무실에서 첫 모임을 갖고, 연행 및 실종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였다. 여기 서 비슷한 시기에 연행됐다거나 미지 풀 러난 노동자와 학생들의 이름을 통해 단 편적으로 흘러나온 「고문」에 그들이 중요한 이유로 떠올랐다.

김문수씨의 부인 薛蘭寧씨(35) 등 노동자가 각 10여명과 청계노조 및 민 가협회원 등 모두 30여명은 13일 오후 2시 40분 NCC 인권위 사무실에서 연행된 사람들의 석방과 고문종단 등을 주장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노동자가 주류생권위원회」를 결 성, 소식으로 「노동자가 주류생권보」 를 5월 15일, 5월 17일, 5월 19일 3 회에 걸쳐 내면서 이를 통해 시노린 노동자들의 인권관계 소식을 각개에 알렸다.

이들은 다시 14일 낮 연행된 사람들 이 조사를 받고 있는 수사기관을 찾아 나서서 먼저 풀려난 사람들의 말을 중 합해 그 위치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 다. 이곳에서 면회를 요구하며 2시 간 남짓 송강이를 벌인 끝에 가족들은 인행했던 사람들이 13일 서울시경으

려사건의 구속자가족들로부터 사건개 요와 「고문내용」에 관한 증언을 들었 다. 이 보고회 참가자들은 「비상시국 에 즈음한 기독교자의 결의」를 채택, 두 「고문사건」을 규탄하고 「고문수사의 중단과 고위직자의 해명을 주정당 다.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도 같은 날 「동들이 외치리라」라는 성명을 발표, 고문의 근절을 위해 「고문행위의 철 지한 공개조사, 고문행위자의 처벌」 을 요구했다.

6월 1일엔 여성변호사이자 독실한 기독교신자이며 11대 민한당 국회의 원을 지낸 黃山城씨(42)가 「고문추방 을 위한 호소문」을 가계에 배포해 놀 람을 얻어주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로 시작되는 이 호소문의 일부 를 소개한다.

「...고문에 관한 이야기들은 고문을 당한 자와 그 가족 그리고 일부 극 소수의 사람들에게 의해서만 제기 되어온 듯하고 저같은 사람마저 너 무나 매는게 자각한 아픔이 더 아려 움 따름입니다... (중략)... 흉악범, 국사범, 양심범 등을 막론하고 이 들에 대한 고문행위는 악한 처사이 며 그같은 악행을 그리스도인이 의

민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총향) : 지금이 바로 이 악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국민적 의식개혁과 적기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땅에서 고분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신한 목전에 동참하시고 곳곳에 위장된 고분장소를 밝혀내어 선용하게 하며 고분도구의 완전 폐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황산성민회에서는 새문안교회 청년신자들의 신앙간증에서 고문 소식을 상세히 듣고 충격을 받아 이 글을 작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NCC 인권위 주관의 86년 인권문제 전국회의 참가자 일동은 6월 4일 「1986년도 인권선언」을 발표, «실인적인 고분행위를 비롯한 모든 불법적인 인권유린행위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민당 개헌추진본부 인천지부도 6월 13일 인천사태 수사과정에서의 고문에 관해 1차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인천교도소에서 4명의 수감자를 만나 조사한 결과 이들 모두 자백을 강요당하며 갖가지 고문을 당

했다.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부친서 권양사건」

「부친정찰서 權오양 성고문사건」은 김근태 수사관과 비견되면서도 어느 의미에선 더 충격적이고, 따라서 훨씬 더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 사건에 대한 각계의 대응에서 특기되어야 할 사항은 순수 여성단체들 로만 구성된 「여성단체연합성고문대책위원회」 및 이 단체와 종교단체들 로만 구성된 「부친정찰서성고문공동대책위원회」의 발족과 활동이다. 또 대한민협이 이례적으로 회장 명의 로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하여 검찰발표 를 반박한 사실과 사상 최대 규모의 변호인단의 구성 및 변호인단의 재정신청 등 법조계의 강력한 대응이 또한 두드러진다.

김수환 추기경이 권양에게 위로의 시현을 보내고 이어 강론에서 이 사건의 진상에 대한 자신의 확신을 천명한 일, 수녀단체들이 대응활동에 뛰어들어, 명동성당 사도회관이 폭로대회 장소로 제공된 일 등 천주교회의 대응 역시 조직의 다른 어떤 사건들에서 보

다 적극적인었던 점도 인상적인 것이었다. 물론 NCC를 비롯한 개신교 단체들의 치열한 활동도 빼놓을 수 없다.

이같은 빛가지 특정한 움직임들을 중심으로, 사건이 표면화된 6월 26일부터 권양의 공문서빈조 등 사건 첫 공판이 열린 10월 13일까지의 상황을 전개를 살펴보자.

16.25 인천교도소에 권양과 함께 수감된 「인천사태」 관련 구속자의 가족들을 통해 권양의 「성고문」 사실이 외부에 처음 알려졌다.

한편 20개 여성단체 연합기구인 「여성단체연합생존권대책위원회」(이하 생대위) 회원 30여명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날부터 NCC 인권위 사무실에서 「여성에 대한 성적 고문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농성애들이 갔다. 이들은 「인천사태」에 관련해 구속된 여성노동자를 포함, 곳곳에서 여성노동자들이 폭행을 당해왔다고 주장, 이에 대한 항의로 농성을 시작했던 것. 농성은 28일 오후 해제됐다.

16.30 권양이 NCC 인권위를 통한 변호사 선임을 원한다는 사실이

동료 구속자 가족들을 통해 전해졌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이돈명 이상 수번호사에 사건 개요를 알리고 고분 수사 선임율을 의뢰했다.

17.1 이상수번호사가 권양을 면회했고, 인천지역 인권선교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한 최초의 경위보고서를 발표했다.

17.2 여성단체연합생존권대책위가 입 단체 대표들이 대책을 논의했다. 오후 4시경에는 인천사태 구속자가족 등 30여명이 부친정찰서에서 항의농성을 벌였다.

17.4 생대위가 사전 폭로 진단을 제작 배포하고 대표들이 부친서를 찾아가 항의했다. 신민당은 이날 「부친정찰서여대생폭행사진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박한상의인)를 구성했다.

17.5 고영구씨 등 9명의 변호인 이 옥봉환부친서장과 문귀동경찰 등 6명을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17.7 생대위가 공개항의서를, 천주교 인천교구 정평위 등 인천지역 3개 단체가 규탄장영지를 발표했다. 인천지검이 이날부터 사건 수사에 착수했고, 신민당의 진상조사위원 및 인

권옹호위원회(위원장 박관중의원) 소속 의원 10명이 인천지검을 방문,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17.9 천주교정찰위 이돈명회장이 우정회장 등 신·구교 및 여성인권 단체 대표 10명이 오전 8시 종로구 견지동 한국교회 1층 112호에서 회합, 대책회의를 가졌다. 생대위는 이날 별도로 「여성단체연합성고문대책위원회」(위원장 박영순)를 구성했다. 그리고 권양의 요청에 따라 황산성번호사가 변호인으로 추가선임됐다.

17.11 「부친정찰서성고문공동대책위원회」(이하 성공대위)가 발족했다. 여성단체연합성고문대책위원회 천주교수녀회장상연합회(회장 김순자 수녀) NCC 고문대책위 정토구현전국승기회(회장 철화스님) 천주교사회 운동협의회(의장 재정주)가 참여했다.

17.12 신민당 조사단이 법무부를 방문, 공정한 수사를 위해 재야인로 변호사를 특별검찰관으로 지명할 것을 요구했다.

17.14 NCC 고문대책위가 오전 8시 한국교회 1층 주년기념관에서 N

CC회장단 및 가맹 6개 교단장·총무초청 연석회의를 갖고 이 사건을 보고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이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한다는 내용의 진의문을 대령에게 발송하기로 했다.

17.15 천주교 천주교구 사제단은 원주 원동성당대기상고문폭로기도회를 개최했다.

17.16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평위는 명동성당 사도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돌들이 일어나 외치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오후 4시 검찰의 이 사건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검찰수사결과에 반발

17.18 성공대위는 오전 8시 1백주년기념관에서 종교계와 여성계 인사 1백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고문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홍성우 변호사로부터 사건 조사내용을 보고받은 뒤 「검찰 수사 결과를 전면 거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권양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9



입맛대로 드세요.
오양 珍味

향긋한 스모그에 그을린
보칭어칩보

고소하고 향긋한
보칭어불채부이

부드럽게 구운
보칭어부이

얇게 썰어 조미한
붕해부이

바삭바삭 튀긴
보칭어튀김

다리만 베이 조미한
보칭어다리부이

매콤달콤한
오양진미취치

수산식품이 원조
오양수신(주)
본사: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76-3
T. 232 6500-9
판매부: 서울 1,718-6785-7 • 부산 1,242-8010

시법원청사내 변호사대기실에서 공
동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수사결과
를 여섯가지 근거를 들어 반박했고,
공대위도 검찰의 발표에 실망과 분노
를 표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수환추기정은 이날 권양에게 위로서
한을 보냈다.

한편 신민당은 이날 오전 이종재부
총재와 박찬종인권옹호위원장 조순형
의원 등을 노선영국무총리에 보내 수
사결과 발표내용에 항의하고 특별검
사의 임명을 재차 요구했다.

17.19 공대위가 주최하는 「고
문·성고문·용공조작법국민포대회」
가 19일 오후 2시 명동성당 구내 사
도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경
찰의 지지로 제대로 치러지지 못했
다.

17.21 대한변협은 김은호회장 명
의로 「성고문사건 조사결과」를 발표
했다.
김수환추기정은 이날 저녁 7시 명
동성당에서 있었던 미사 강론에서 당
국은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권
양은 이날부터 검찰발표에 항의, 단
식에 들어갔다.

17.25 함석헌씨 등 재야 민주동
지회 회원 20명은 간담회를 갖고 권양
에게 믿음과 용기를 가질 것과 단식을
중단할 것을 부탁하는 처신을 보냈
다.

17.26 김대중, 김영삼씨도 권양
에게 편지를 보내 단식중단을 호소했
다.
17.27 NCC 고문대책위 등 23
개 개신교단체로 구성된 「성고문추방

기독교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성고
문규탄기도회」가 오후 2시 대한성공
회대성당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지지 때문에 성당 정문앞성당
안 및 새문안교회에서의 「비상기도
회」로 대체되어 진행됐다.

17.29 미국무성 공보국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친사건에 대한 질문
을 받고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그리한 비난의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이 사건에 관계된
경찰관이 수감된 권양을 구타하고
유심을 피부는 사신을 하인했다.
그 경찰관과 그의 상사 3명이 해직
되었다. 권양에 대한 경찰의 가혹
행위가 시인된 사실보다 더욱 심하
고 가혹한 것이었다는 믿음만한 추
장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수감자

취급이 개탄할 만한 일일뿐 아니라
소름끼치는 일임을 안다. 수감자들
의 고문과 학대에 관계되는 모든 사
건에서, 우리는 한국정부가 보통 사
규정된대로 책임있는 자들을 처벌
하고, 이같은 권력남용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
을 촉구한다」

18.4 천주교의교인권익서제단
은 서울 흥제동성당에서 「인권회복을
위한 9일 기도회」를 열고 「이 사회의
민주화와 인간화를 거듭 호소한다」는
성명을 발표, 지구이라도 진실을 밝
힐 것을 촉구했다.

1백66명의 사상최대 변호인단
17.28 18.11 광주 부친 이리 청

주부산대진 등지에서 종교단체 주관
으로 「성고문」 폭로·추방을 위한 집
회가 열렸다.

18.14 신민당과 민주협이 주최한
「고문·성고문·용공조작법국민포대
회」가 오후 2시 10분부터 서울 신민
당 중앙당사에서 강행됐다.

19.1 검찰이 8월22일 문귀동경
정을 기소유예처분하기 사법시정 회
대규모인 1백66명의 변호인단이 이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의 심판에 불이
도록 재정결정을 내리달라고 인천지
검에 신청했다. 이 신청은 9월5일
인천지검, 9월30일 서울고법에서 각
각 기각돼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중이
다.

19.7 경남 함천 해인사에서 조
계종 승려 2천여명이 「불교관계법

철폐 및 전면개정을 위한 전국승려대
회를 열고 부친경찰사건의 진상
규명을 함께 요구했다.

10.7 권양의 재정신청변호인단
은 서울고법 형사3부에 이 사건 수사
기록 등사신청을 제출했다.

10.11 변호인단은 다시 서울고법
에 권양과 문귀동씨를 직접 불러 증거
조사를 하달리고 신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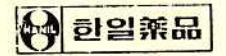
10.12 권양의 공문서변조 등 사
진 첫 공판이 인천지법 형사3부 심리
로 열렸다. 이날 변호인측은 증거조
사신청이 기각당하자 바로 재판부 기
피신청을 제기했다.
10.15 권양은 국가를 상대로 5
백만 1백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제기.
다소 장황하게 임의 진전을 살핀 것

복용하고 계십니까? 간장약 프로헤파롬-골드

- ★간해독
- ★지방산제거
- ★간기능활성
- ★소화촉진
- ★혈액순환촉진

5중 효과의 종합간장약
프로헤파롬-골드

표준소매가격: 100정 9,900원



일동제약이 개발한 위염, 위·십이지장궤양 치료제

은 이들의 대응에서 이 사회의 「反拷問」 「反性拷問」의 의지가 그대로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권양사건에 대한 대응에는 이 사회의 거의 모든 양심세력의 슬픔과 분노와 마음다짐이 함께했다고 볼 수 있다.

고문은 근절되어야 한다

고문은 근절되어야 한다. 고문이 어떻게 어떤 학살이 사회에 끼치는가에 대해서는 세삼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정부당국도 적어도 공개적으로 이같은 인식에 이의를 달지 않는다. 오히려 고문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기까지 한다. 지난 83년 4월 내무부는 김근조씨 고문치사사건과 관련, 경찰수사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선안은 △용의자를 임의동행할 때 사유를 통보하고 △경찰서조사실을 별도로 설치, 녹음장치와 TV카메라를 설치해 감시하며 △야간수사를 금지한다는 것 등이었다.

또 지난 7월 18일엔 치안본부가 부친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근무지침을 전국경찰에 시달렸다. 치안본부는 이 지침에서 △학원사태 등과 관련된 연행한 여성피의자를 조사할 때 여경 또는 여성타이피스트를 임회시키거나 2명 이상의 수사관이 임회할 것 △피의자에게 폭언·폭행을 하는 일이 일체 없도록 할 것 등을 지시했다.

85년 10월에는 고문금지 등을 규정 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일명 B조약)에 가입키로 하

피고인은

1985. 8. 24 서울 중부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에 의해 체포되어 85. 8. 10차 민청련 제 5차 총회 결의문과 관련된 유인비어 혐의로 8. 26 즉결심판이 청구된 후 구류 10일을 선고받아 서울 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2주간을 복역하다가 9. 4 05. 30 유치장으로부터 바로 서울 〇〇구 〇〇동 소재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건물로 인치, 불법감금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9. 7에 용산경찰서 유치장에 구류시키는 보통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그 구속영장은 9. 25 21. 30 〇〇동 소재 위 건물 515호에서 제시 받았을 뿐이며, 그 제시받을 당시 피의사실의 요지, 변호인 선임권 및 묵비권의 고지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고, 용산경찰서 유치장에 는 단지 9. 26 03. 20에 인치되어 09. 00까지 체류하였을 뿐이라 하며, 이러한 사실에 대한 다른 반증은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명백히 85. 9. 4 05. 30부터 구속영장이 제시되고 구속영장에 기재된 유치장소인 용산경찰서 유치장에

잠시 체류하게 된 85. 9. 26 03. 20까지 22일간, 정확히 말하면 5백 26시간 동안 불법하게 구금되었다.

구속영장 발부일 이후에도 불법구금이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이유는 구속영장이 전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피의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으 며 영장에 기재된 구금장소에 유치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 85조 제 1항, 제 88조가 구속의 법적 절차에 관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반드시 영장이 제시되어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장소에 인치하여야 하며, 집행 전에 반드시 피의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알려주고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묵비권과 변호인 선임권의 고지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불가결적 요건이다. 결국 피고인은 무려 5백 26시간 동안 무명의 구금상태에서 변호인 선임은커녕 고지되지 않은 고문, 폭행, 강요된 체절망적 상태에서 고통을 강요 받았다. ...

- 1일 2회 간편한 복용
- 1주일 증상 소실
- 1개월 단기간 치료

위염, 위·십이지장궤양에



표준소매가격 60정 : 49,800원
20정 : 16,600원

일동제약

고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동의안을 내놓았다. 물론 몇개항에 대해선 적용을 유보키로 했지만. 이같은 노력들은 83년 4월의 조치가 용두사미가 되었던 것처럼, 수사당사자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실천하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갖지 않는 한 실효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고문의 근절을 위해선 고문 그 자체를 안하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수사당국이 연행에서 기소에 이르기까지의 재판 절차를 철저히 적법하게 밟음으로써 고문의 기회가 최소화하도록 하고, 특히 사법부가 그 권한과 의무에 충실함으로써 이것이 지켜지도록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김근태씨사건의 1심변호인의 변론을 보면 그 중요성이 절감된다.

그래서 민협의 「1985년 인권보고서」는 「이 시건의 처리 결과 이하에 따라지는 전반적인 인권상황이 70년대의 긴급조치시대의 수준으로 후퇴할지도 모를 중대한 위험 아래 놓이게 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한 것이다. 그후의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민협은 자신들의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부친사건」에 대해서도 그것은 우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변호인들이 참여한 채 그 추이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

박정권 18년
표권력의 내막

李祥雨

革命이었던가? 野慾이었던가?

독재, 反민주, 反인권, 1차정체 등 갖가지 어두운으로 얼룩진 박정권의 통치 18년. 그의 의욕과 집념, 욕망과 꿈, 성격상의 결함이 그대로 정권에 투영된 18년 통치란! 그 결과 무슨 무엇인가?

13,900원 (서울) 783-9772



司法府는 拷問追放의 마지막 보루

金 日 秀

(高麗大法大副敎授·刑法學)

우리 司法文化의 현주소

한 나라의 法文化수준은 민주주의의 성숙도에서 결정된다. 이 민주주의의 성숙도는 그 나라 그 사회의 지배층이 얼마나 법적 절차와 요식에 맞춰 충실히 행위하는냐에 달려 있는 것만이 아니다. 오히려 지배층에서 떨어져나간 소수 소외계층의 자유와 권리가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정당화된 이 지배계층의 행위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존중되고 보장되고 있는냐에 따라 판명되리라 고 본다.

흔히 범죄인을 사회적 강자처럼 다루는 오류를 우리의 刑事司法은 자주 저지르고 있다. 특히 세간의 이목을 집중케 할 만한 강력범죄는 정치범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범죄의 피의자·피고인이라는 지위는 이미 한 사회의 외곽에 밀려나 않은 소수의 약자라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수많은 범죄행위자들은 범죄인이라는 공적 낙인을 받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긴장한 사회

라고 하더라도 이 暗數의 폭은 넓게 퍼져 있기 때문이다. 범죄의 압수 가운데 현실적인 소송절차과정에서 이르러는 형사피의자·피고인은 단순한 범죄의 적용에 의한 논리적 필연적 산물만이 아니다. 그 밖의 여러가지 정치·경제·사회적 복합요인들을 고려하여 범죄 통제과정에서 신빙된 소의 계속에 해당하는 사회적 약자의 무리가 바로 이들인 것이다. 이들은 피의자·피고인을 형사사망에 여하히 다루고 있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법률화의 민주주의적 성숙도를 거의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 일찌기 「원스틴 치칠」경이 「한 국민의 위대함은 그들이 그 사회의 범죄인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에서 분명히 나타난다」고 한 지적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과거 緝聞節次制度下에서는 피의자에게 진실을 진술해야 할 의무가 과하여 졌다. 만약 신문자의 눈에 피의자가 진실을 감추고 있다고 보이면 재배강요를 위한 拷問도 합법적으로 허용되었다. 그러나 프랑스혁명 이후 화립되기 시작한 彈劾主義의 형사절차에서는 인권사상의 지도 아래 피의자에게 自己負罪拒否의 특권이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自白倫理에 의한 고문을 배제하기 위한 고려로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권도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우리 형사소송법도 이러한 탄핵주의적 소송절차의 원칙에 따라 여러가지 제도적 인권보장책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상 인정된 여러가지 인권보

장책은 인권이념에 비추어 볼 때 결코 민족스러운 제도의 원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수사 현실은 이 불충분한 범죄도상의 요구조차 제대로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반발하는 무더기 구속사태, 불분명한 영장의 남발, 임의동행 등 범죄한 불법 拘引, 보호라 명목으로 행해지는 불법 拘禁 등은 피의자 구속에서 수사기관의 인권의식과 수준을 짐작케 하고도 남는다.

중거재판은 인수가 둔 심방성질은 인적·물적 증거의 다각적 수집을 통한 과학적 수사를 게을리하고 타성에 젖은 무방식 조사, 육감수사에 의존하다 보니 무고한 사람들이 진과 자리는 명목만으로 혐의진정에 떠오르게 된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본인의 진술에 과도하게 집착할 뿐만 아니라 신문에서 자백편중의 폐쇄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자백에 연인하다 보니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인 범죄사실 부인권과 묵비권 행사는 수사기관에 대한 도전이요 모욕처럼 느껴지고, 그리하여 때로는 육질과 폭행과 고문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다.

수장을 찬 그대로, 묶여진 그대로 신문을 받아도, 비인간적인 고문상황에서 인간으로 대접받기를 거부당해도 이를 수사자의 현장에서 변호인이 참어하여 다룰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다. 실제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열린 대화와 토론과정으로서의 신문이 아니라 조사자의 미리 속해 미리 정한 각본대로 대답을 강요당하고

불법언행과 불법구급은 그 사건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증거법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뿐이라는 확립된 법원의 관행이 없이는 고문은 근절되기 어렵다.

압도당하는 과정이 신문인 양 오인되는 경우가 없지 않다. 사법부는 국민 개개인의 인권과 자유 및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적 고문상황은 사법절차의 출발점을 뒤엎고 있는 것이므로 사법은 당연히 피고인의 이같은 소리에 민감해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소리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 시대의 사법은 도리어 비민주적·권위적 사법에 머물러 있다는 비난의 소리를 자주 듣는다.

도시법관은 자기 앞에서 하는 피고인의 발언에 전혀 비중을 안 두려고 한다. 검사 앞에서의 자백은 진적으로 신임이 가고 자기 앞에서의 부인은 알미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생리는 판결선고에서 피고인의 법정태도가 나쁘기 때문에 형을 가중했다는 뻔뻔스럽고 가공할 만한 독선으로 표현되고 있다.

어떤 재판에서는 법관이 일사불란하게 용이까지 통일시켜가며 검사를 지휘·감독하여 피고인을 몰아붙이는 주역을 연출하고 있는 모습은 차라리 불쾌한 그 이상의 것이라 는 소리도 듣는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든지 「소추자측에 있다는 것은 형사증거법상의 대원칙임에도 현실의 운영은 종종 그 반대이다. 1981년 3월 10일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의 진빙성에 의심을 있다고 한 대법원판결(81도 68사건)이 있기까지 25년간 소송절차에서 검찰자백은 단지 증거의 여왕이 아니라 증거의 폭군으로 군림해 왔고 허다한 오만이 법원의 검찰자백 지상의 과오 때문에 벌어진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인권사조의 영향 아래 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지

피의자는 조사의 개체이며, 피고인도 강제처분의 대상 내지 절차의 대상 또는 증거방법이라는 사고가 지배적이다.

또한 피의자·피고인은 확정판결을 받기까지는 무죄추정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응보 때문에 구속하에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재판에 맡아야 한다는 사고도 분식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 「피자의」 또는 「지정된」 「인민을」 「방자」라는 것은 公判審理를 위한 「법원출석과」 「최소한 재판 확보 및 특혜 시 자유형의 실현선고」가 있을 때에 대비하여 그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구분절차에서처럼 피고인·피의자를 묶어두고 신분하여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형사사법에서 구속영장이 남발되는 것은 피의자에 대한 유죄의 예단을 필바탕으로 하여 죄를 지었으니 고생해야 마땅하다는 응보적 징벌구급의 잘못된 인습 때문이라고 보인다.

불법수사결과에 결연히 배척해야

더 나아가 사법부는 불법구속이나 불법구급으로 얻은 자백 또는 증거물의 효력에 대해서 그것이 경찰앞에서 행하여진 결과이건 경찰앞에서 행하여진 결과이건 간에 일체 단호하게 배척하는 결연한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종래 피의자에 대한 강제수사의 길을 억제당한 수사기관은 흔히 임의동행의 형식을 취한 강제연행과 이에 따른 「가사」 「노조」 「이혼」 「불법구급」 「불법구급을 탈법적으로 행하여 왔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구속하는 때에는 피의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구속사실을 가

30여년이 지났건만 형사사법의 실체는 구태의연을 벗어날 줄 모른다. 편법수사 탈법수사 불법수사를 넘어 고문상황을 물고오는 무법수사가 오늘날까지도 자행되고 있는 것은 우리의 刑事司法의 무딘 인권의식과 인간 하대적 관용이 그 온상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司法府가 해야 할 일

수사절차에서 자행되는 고문을 방지·근절하기 위하여는 과학적 수사가 정착되고 수사인력의 인권의식이 내면화 돼야 하는 등이 근본적인 개선책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제도상 이같은 고문을 수사공토에서 영원히 추방하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고문문제에 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수사란 그것이 비록 고문수사라 할지라도 사법절차의 요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사법절차에서 이같은 고문의 의의가 있을 때마다 일체의 수사가 무효라 할 과의 진실성을 기부한다면 수사기관에 대한 인권의식과 직법한 수사에의 동기유발에 큰 몫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자면 먼저 사법부는 인신구속과 관련된 영장심사에 서부터 신중을 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불구속수사의 원칙 또는 임의수사의 원칙이라는 소송법의 흐름을 좇아 회기적인 관행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의 형사사법의 현실에는 아직 응보형사고가 지배하고 있다. 이 응보형사고는 피의자·피고인의 무죄추정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사실상 압도해 부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하여

죽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해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동행이나 보호유치에 의한 때에는 이러한 제한도 잠탈할 수 있다. 피의자도 호텔이나 여관 등에 사실상 구속되어 있으면서 구속기간의 제한도 받지 않고 그 기간은 미결구급일수에도 산입되지 않는다. 피의자의 가족들이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것도 보통이다.

이런 의미에서 임의동행의 형식을 띤 불법연행과 이에 따른 보호유치는 구속과 같은 실질을 갖고 있으면서도 임의조사라는 미명 아래 피의자에게 구속보다 더 가혹한 불이익을 초래한다. 또한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강압과 폭행, 고문 등이 바로 이같은 탈법상황에서 저질러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다면 사법부는 불법연행이나 불법구급으로 인한 자백 또는 증거물은 최초로 이것을 자행한 수사기관의 것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행하여진 그후의 다른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또는 증거물이라 할지라도 임의성을 일단 부인하는 결연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법관은 만에 하나라도 불법의 과실로써 빙을 선언하는 자기모순에 빠지는 안 된다. 불법연행과 불법구급은 그 사건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증거법상의 불이익을 가지울 뿐이라는 확립된 법원의 관행이 정착되지 않고서는, 수사기관이 취사리 이같은 불법에의 유희를 떨쳐 버리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은 피의자·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입증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태도를 확정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임의성있는 진술이었다는 점과 그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당

말하는 팩시밀리

대우팩시밀리



모든 조직순서와 자체고장 유무를 목소리로 안내해주는 다기능 초고속 대우 팩시밀리 DF-1000

대우 팩시밀리 DF-1000은 국내 유일의 독자적인 음성 안내기능으로 모든 조작이 손쉽게 간편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의 중추기가 됩니다. 완전 자동화된 이리까지 혁신기능으로 OA시스템 구성에 가장 적합한 대우 팩시밀리 DF-1000 새로운 차원의 본격 사무자동화기기 대우 팩시밀리로 경비절감과 능률향상을 동시에 실현하십시오.

- 대우 팩시밀리 DF-1000의 10가지 혁신기능
- 국내 유일의 독자적인 음성안내 기능 (말하는 팩시밀리)
 - CO계속 전송 다이얼 기능
 - 시간지정 송수신 기능
 - 1회 리콜이송 기능
 - 컴퓨터 연동기능 (RS-232C)
 - 시동부서 요금관리기능 (50개소)
 - 송수신 매수 Set기능
 - 원고농도 3단계 조절기능
 - 순차 Polling기능 (100개소)
 - 송수신 Report기능

□전국 지역별 판매점 및 이프터 서비스점

- 취급대리점**
- 서울 2기서: ● (주)삼성시서기: 777-4741 ● (주)영진 OA: 784-1827
 - 대우컴퓨터 (대우): (인천)64-5551 ● 부산시서기: 대우 OA SYSTEM
 - 452-2011 ● 인천비즈니스: 87-9338 ● 경남북지역: ● 새관영신서사
 - (대구)22-4515 ● 새관영기: (대구)46-1149 ● 이노터시서기: (대전)42-7755
- 판매목적점**
- 서울지역: ● (주)가이카 중앙: 356-7244 ● 강남: 553-3211
 - 여의도: 783-3211 ● 영선: 794-3211 ● 영동도: 676-3211
 - 대우컴퓨터: ● 한국컴퓨터: 244-2081
 - 한국컴퓨터: 782-1716 ● 한국컴퓨터: 548-9521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1동
 - 771-57 ● 보령시내: 733-3551 ● 서울: (관악) 546-5748 ● 한국 OA SYSTEM
 - 586-7120 ● 한국여의: 시서기: 294-8095 ● 대전: 784-2733 ● 상이전: 583-8523
 - 한국전: 777-0911 ● 영: 3211 ● 영: 533-9441 ● 영: 43-3211 ● (주)가이카 수원: 33-3211
 - 영: 3-3211 ● 영: 3211 ● 인천: 762-3211 ● 인천: 43-3211
 - 강원-춘천북지: 1 ● (주)가이카 평주: 52-2983 ● 대전: 45-3211 ● 춘천: 53-3211
 - 강원-춘천북지: 1 ● (주)가이카 평주: 34-3211 ● 춘천: 52-3211 ● 전주: 4-3211
 - 대구: 53-3211 ● 부산: ● (주)가이카 부산: 42-3211 ● 대구: 23-2311
 - (주)대우 전국 영업: ● 대전에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 (주)유형기서기: 755-2021



언히 검사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 자백은 원래 증거의 여왕이라고 불리어왔을 정도로 수사기관에서 이에 집착할 위험이 큰 것이다. 그럴수록 자백의 증거능력에 더욱 엄격한 요건을 요구함으로써 자백편중으로 인한 고문의 폐해를 줄여야 할 필요성도 크다. 더 나아가 위법한 절차에서 얻어진 자백이나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사법부는 엄격히 부인하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명실에서 강요내지 오도된 자백이 공판정에서 증거의 여왕으로 환영 받고 있는 한 수사기관의 자백요요 또는 자백의 존적 수사 자제는 시정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피의자는 일단 체포되면 그 때부터 막강한 권한을 가진 권위주의적·고압적인 수사기관의 수중에 사로잡힌다. 더우기 현행제도하에서는 피의자 조차서 변호인의 참여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는 구속된 그날부터 철저하게 고립되어 자기를 방어할 능력조차도 가질 수 없는 상태에 빠진다. 그러한 피의자에게 진술기부권을 주지 않거나 집권·교통권을 봉쇄하고 수감이나 포승으로 묶어 놓은 채 조사를 거쳐 얻어낸 자백은 피의자의 주체성을 짓밟는 비인도적·비문화적 처사의 결과이다. 따라서 그 증거능력을 적지히 부인하여 그와 같은 위법절차로 얻어진 증거가 직접절차에 의해 진실을 추구하는 재판에 도저히 받아들여 놓을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고문·폭행·협박·기망·신체구속의 부당한 장치화(형소법 제 309조)로 얻어낸 자백이 직접적 고문상황에서 자란 아한 열매이듯이, 위법한 압수·수색절차에서 얻어낸 증거물도 피고인의 인권보장이념에서 본다면 정중을 가릴 필요없는 간접적 고문상황을 통해 맺힌 아한 열매임을 말

할 것도 없다. 특히 이 점에 관해 우리 대법원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다라고 압수물의 형상이나 성질에 변질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증거물의 증거가치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大判 1969.9.17 선고 68도 932사건 판결)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단견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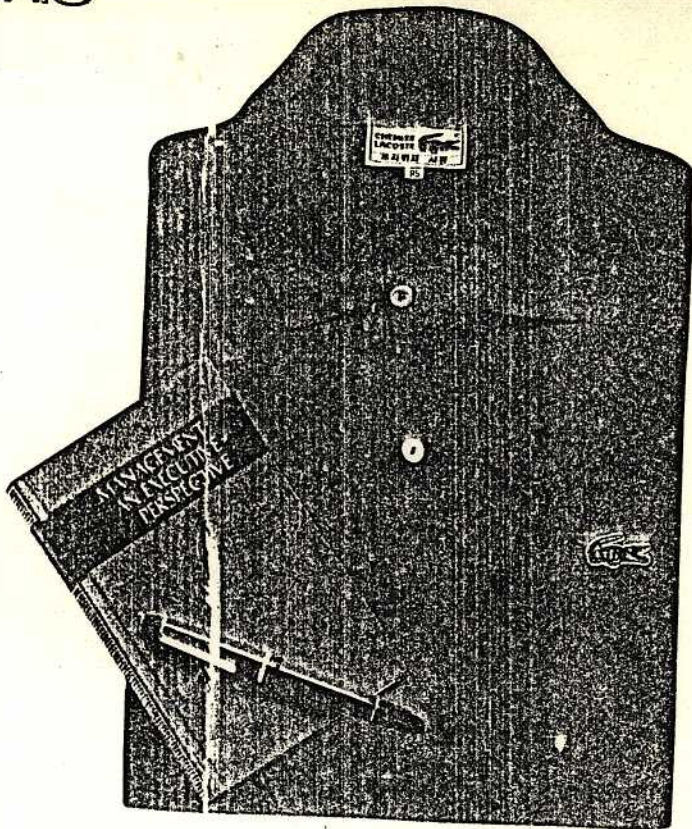
고문문제 외면한 판결은 법의 실현 못 얻어

요컨대 사법절차에서 적법절차(The Process of Law)의 이념에 따라 인권이익을 강조하는 것이 자유민주적 사법 이념이라면 위법절차에 의해 얻은 증거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거나 적어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의 관행과는 전혀 다른 엄격한 입장을 새로이 견지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본다.

그러자면 우선 위법절차에 의하여 얻은 자백, 즉 불법구금 과정에 얻어낸 자백, 별전 구속중의 자백, 변호인의 선임 및 점전·교통권이 보장되지 아니한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얻어진 자백, 施錠조사에서 얻어진 자백, 개인의 인격성의 자율과 인격적 內秘를 침해하면서 얻어진 자백, 저항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폭력하에 얻어진 자백, 진지하게 진술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거나 적나라한 폭력 앞에 그것이 진리로서 인정되지 않거나 그 내용은 사실부스스로가 누구의 항변을 듣기 이전에 헌법 규범으로부터 명령받은 고유한 인권옹호의무의 이행에 의해 소송의 과정에서 즉각 배제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위법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물 역시 이를 증거로 함에는 그 위법성의 정도와 압수물의 성질 등을 임

리코스메제품은 특약점과 유명백화점에서만 판매합니다



“악어의 哲學”

1925년 위문단 테니스대회의 챔피언, 르네 리코스메!
그가 탄생시킨 악어마크 “리코스메”는 세계 골프챔피언의 유니폼으로,
세계 명성인들의 캐주얼웨어로 오늘날 세계적인 인기와 명성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입어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든다는 르네 리코스메의 철학이 반세기를 변함없이
리코스메의 제품 하나하나에 숨어지 있기 때문입니다.
유행을 좇아 유행을 선도하는 악어철학, 경험해 보십시오.



저하게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이를 증거로 하
용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사법부의 태도가 확고해지야
할 것이다.

형사소송은 다수의 소송 관여인과 소송주체들의 의사소
통과 대화에 의해 실제적 진실을 형성해가는 민중론적 과
정이다. 이 진체 과정에서 만약 어떤 고문상황에 의해 인
어떤 야만적인 증거가 문제될 때에는 일단 비원은 수사기
구로 돌려 버리고 자유와 인권의 이름으로 피고인의 무죄
를 즉각 확인하는 인권우호적 의지를 표명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고 본다.

고문 이부가 문제되는 한 막강한 수사권력의 도덕적 진
실성은 이미 땅에 떨어진 것이고, 이 점을 묻어 두고 뒤이
낀은 판결은 아무리 그 결과가 정형적과 법률에 맞는다 할
지라도 피고인의 손상된 정의감을 만족시키 줄 수는 없다.
결국 억울하다는 당연한 절규만을 법정에서 남겨두게 된다.
이렇게 되면 피고인이 실형 유죄판결을 받았다 할지라
도 그 결과에 승복하기는 커녕 법과 사법을 원망하게 되고
사회복귀를 위한 자기개선의 노력을 미리 포기하는 결과
를 낳을 것이다. 고문은 그것을 통해 일으키고 하는 법의
실현이라는 귀한 목표를 이치럽 그 출발점에서부터 그르
치는 자기모순을 드러내는 비문화적 현상이다.

司法문화의 무던人權의식

대검찰청의 1984년도 범죄분석이나 법원행정청의

1985년도 『사법연감』에서는 공판사건 중 구속기소사
건의 비율은 지난 10년간 1981년을 고비로 하여 종전
의 81.5%에서 77.9%로 감소되고, 1984년도에 이
러 75.8%로 줄어들었으나 역시 계속 높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구속수사사건 중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 사건의 비율은 75%이고 나머지 25%는
구속취소 처방되었다.

한편 구속기소된 사건 중 58%에 상당하는 사건이 법원
에서 집행유예, 벌금형 또는 무죄 등으로 종결되었다. 형
집행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아직까지 우리의 현실에
서는 인신구속이 불필하게 남용되고 있다. 이 같은 남용은
구속 자체가 응보적인 징벌수단으로 오용되거나 피해민상
등을 위한 인질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성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법문화의 무던 인
권의식 때문에 비롯된다.

비록 직접한 요식성을 갖춘 구속이라 하더라도, 구속 그
자체는 피구속자를 포로와 같은 무방비한 상태에 전락케
한다. 외부세계와의 단절 속에 고립되고 나면 그는 말할
수 없는 굴욕감과 자기혐오의 감정을 갖게 된다. 그것이
장기화하게 되면 초조하고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자신의
치지를 비판하고 희망을 상실하게 되는 등 고문상황에서
야기되는 자신에 대한 신뢰감 상실 및 외부세계에 대한 신
뢰감 상실과 똑같은 인격상실에 이르게 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하물며 부당하고 불필요한 구속에
의한 결과가 단지 직접한 요식성을 갖추었다고 해서 당연
히 정당화될 수 없다.

인신구속은 이같은 인격파괴의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

에 법원은 기왕에 주어진 영장심사에 있어서 사법적 통제 기능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의례 소명자료에 의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이려 하는 사법부의 태성은 새로운 인권감각에 의해 깨뜨려져야 할 것으로 본다.

영장대기 위한 「보호조치」는 불법감금

일찌기 대법원은 영장대기를 위한 이른바 보호조치에 대해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법정절차에 반하는 것으로 그것은 정당행위가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경찰관은 불법감금죄(형법 제124조1항)를 범한 것임을 인정하였다(大判 1971.3.9 선고 70도 2496사전 판결).

이점에 관하여 대법원은 1985.7.19자 85모16호사 전 판결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즉 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하는 수사경찰관 3명은 주민의 신고에 의해 피신고자 김모씨가 불온배라를 소지하는 등 국가보안법위반행위 가능성이 있음에 이유로 경찰서까지 임의동행 형식으로 이니하고 수사를 계속하면서 경찰서의 조사실과 보호실에 억류 내지 유치하였다. 그 후 이 피해자의 형은 수사경찰관 3명들 상대로 불법감금죄 등으로 고발했다. 이 고발사건에 관하여 검찰은 입증할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 이에 대해 고발인은 대구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자 동법원은 같은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 재정결정이 법률에 위반된 것임을 이유로 고발인이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은 1985.7.19자 85모16호사 전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즉 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하는 수사경찰관 3명은 주민의 신고에 의해 피신고자 김모씨가 불온배라를 소지하는 등 국가보안법위반행위 가능성이 있음에 이유로 경찰서까지 임의동행 형식으로 이니하고 수사를 계속하면서 경찰서의 조사실과 보호실에 억류 내지 유치하였다. 그 후 이 피해자의 형은 수사경찰관 3명들 상대로 불법감금죄 등으로 고발했다. 이 고발사건에 관하여 검찰은 입증할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 이에 대해 고발인은 대구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자 동법원은 같은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물론 1964년의 에스코메도 판결과 1966년의 미란다 판결에서 미인방대심원은 위법한 절차하에서 얻어진 자백은 그 임의성 유무에 불구하고 증거로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소위 위법배제설을 확립하였다.

법률적 조처로서의 증거능력 부인 판례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시명날인할 시인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에서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하여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된 것이라 고의 심할 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오고 있다(大判 1982.6.8 선고 82도 754사전 판결).

이러한 태도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주고 있는 입장이 되어 형사소송법 제317조 1항이 정지조진부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와 상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판례의 태도는 피의자가 경찰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후 검사앞에서 한 자백의 증거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검사작성의 조서에 관한 증거능력을 부인한 몇 가지 판결만 판례들이다. 하나는 「피고인들이 영장이 없던 호텔에 인행되어 외부와의 연락이 두절된 채 감금되어 수사경찰관의 의뢰 받은 문건을 당하여 제출서를 쓰고 경찰관 임의하에 검사의 피의자신문이 행하여졌으며 기소 후 고소수감 중에도 야간에 불려가 경찰관이 폭행하는 자리에서 검사가 공판과정에 진술을 반복하면 좋지 않

대법원에 제하고하자 대법원은 원심법원인 대구 고등법원이 구속과 불법구금의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한 결정을 했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신체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이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없는 것이다. 헌법 제11조는 이러한 취지를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73조, 제201조 및 제206조는 피고인 및 피의자를 구속함에는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야 하고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에도 48시간 또는 72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아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적법절차의 요구를 위반하고 구속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함부로 구속하여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였 다면 직권을 남용한 불법감금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임의성없는 자백 또는 위법절차에 의해 얻어진 자백의 증거능력문제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과거 너무 수사기 비호하는 판결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우리나라 법관들도 인간의 개개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미국의 인권판례(Biscoedo-Miranda Rule)에 접근하는 진취적 자세를 점차 보여주기 시작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을 것이라고 위협을 하였다면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로 된 것이라 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결(大判 1981.7.28 선고 80도 2688사전 판결).

다른 것으로는 「피고인은 1981.4.2.14:00경 경찰서에 인행된 뒤 같은날 5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때까지 사실상 구금상태에 처하여 진술한 진술은 사실에 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이 임의성없는 상태에서 진술된 것이라고 의심할 사정을 엿볼 수 있고 이러한 심리상태가 경찰로부터 수사기록과 함께 피고인의 신명을 송치받은 날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까지도 계속되었으리라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원심이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임의있다고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음은 위법」이라는 판결도 있다(大判 1982.2.23 선고 81도 3324사전 판결).

위 판결들은 모두 불법구금상태에서의 자백강요와 그로 인하여 억압된 심리상태 계속 중에 검사앞에서 한 자백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배척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인권판결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대법원판결은 그 후 하급심판결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끼쳐 가장 최근인 1986.10.7자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부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고문으로 허위자백했다고 볼 수 있고 검찰수사에서 고문 후의 인압된 심리상태 이래서 범행을 자백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자백의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살인 혐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구형한 검찰의 주장에 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이다(東亞日報 1986.10.20 2005호)

大法院의 괄목할 인권판결

우리 대법원의 괄목할 만한 인권판결로는 그 밖에도 소위 金詩勳판결(大判1982.9.24 82도1479사건 판결), 鄭載巴判決(大判1983.9.13 선고 83도 712사건 판결) 및 高淑鍾判決(大判1985.2.26 선고 82도 2413사건 판결)을 들 수 있다. 무고한 피고인들이 모친·고문 앞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값비싼 대가를 지급하고서야 우리 시대가 비로소 연을 수 있었던 인권판결이란 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金詩勳판결에서 대법원은 이차피 진범이 나타난 상황에서 자필진술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폭적인 개도수정을 단행했던 것이다. 즉 「경찰조서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피의자가 작성한 자필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 312조 제 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의 유효를 결정해야 하며 같은 법 제 313조 제 1항 본문에 따라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의 강요에 의해 피의자가 작성한 자필진술서는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술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 진술서의 진정성립 진술의 임의성 여부를 불문하고 증거력이 배제된다」는 결론에 이르르게 되었던 것이다.

그 밖에도 鄭載巴판결에서 대법원은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백이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서 사용될 자격, 즉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 즉 증명력까지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피고인의 자백 진술의 수차에 걸친 변경이 당초에 의도적으로 숨겼던 사실을 밝히거나 부정확한 기억을 되살린 것이라기 보다는 피고인이 허위로 자백한 내용 중 객관적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을 그 후 객관적 상황에 맞추어 수정한 것으로 보려는 경우, 이와 같은 자백은 그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살인누명의 피고인에게 무죄를 확정시켰다.

판결은 종래 사법부에서 철칙과 같은 관행으로 통해오던 검찰자백 2유죄판결이란 신화적 공식을 깨뜨리고 검찰자백의 어왕갈던 가치를 하나의 하찮은 하녀의 지위로 전락시켜 버렸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고수종판결에서도 대법원은 앞의 정제파판결의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형사소송법 제 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고의 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원에서 규정된 피고인의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유는 원칙적으로 예시사유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지시하였다.

또한 자백의 신빙성 유효를 판단함에는 첫째,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둘째,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떠한가 셋째, 자백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지추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여러가지 점들을 심사숙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들어 고문에 의한 피고인의 일관성 없는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할 것을 거부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몇 가지 이와 같은 인권판결로 우리 시대의 고질적인 고문의 병리를 치료하고 이를 영연히 추방하기에는 우리 사회의 반인권적인 풍토의 장벽이 아직 너무 두터웠다. 수사의 민주화와 인간존중하가 이같은 인권판결의 바람으로 싸울 트기에는 아직 그 토양이 너무 척박하다. 최근에도 문제가 되었던 金權泰 사건이나 부친서사건 마위가 우리 주변에서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및 사건의 처리에서 법원이 이 보아줄 태도도 또 보지 못할 터도가 반인권적 관행으로 로 전개되리라는 낙관론을 피기가 주저스럽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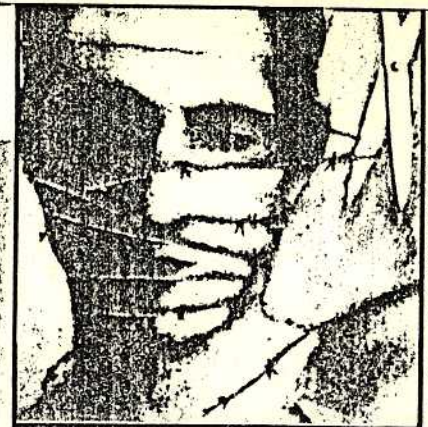
司法院와 인간尊重的 정신

인제부터인가 우리들은 법관의 검사와 검사의 경찰화 현상을 인권상황의 위험수위 내지 적신호로 기록해 오고 있다. 서울 등 큰 도시를 제외하면 지방 소도시의 법정에서 아직도 단독판사가 검사의 임의권이 검찰관 겸 재판장의 일인이여를 수행하는 모습을 두고 하는 말이거나 사법경찰관의 불합수사를 통제해야 할 인권옹호직무를 겸하고 있는 법률가인 검사가 손이 안으로 굽는 식의 반인권적 비리의 비호에 급급하는 남독할 수 없는 현상을 두고 하는 말일지도 모른다. 특히 법관은 공정해야 하고 될 수 있는 한 그리고 필요한 한 피고인의 인권을 위해 소송에 직권적 관여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재판장이 호통을 치며 내가 기록을 전부 읽었는데 경찰·검찰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무슨 수작이

나고 몹시 꾸짖기에 국가기관은 어디나 다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이 빈번할 것을 체념하고 되도록 되라는 식으로 심문에 응했다」는 어느 刑除者의 말은 우리의 사법현실의 이두운 한 장면을 반영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적어도 인제부터라도 법관은 검사와는 다르게 검사는 사법경찰관과와는 다르다는 인식이 재판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식에 뿌리를 내리게 되어야 한다.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법치국가적 보장자 또는 인권의 진정한 보호수준이라는 관점에서 그 고통의 소리를 트로서 약한 자, 인륜린 자 편에서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열린 귀를 가진 직업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법부가 「인간존중의 정신」(sensus humanitatis) 속에 살고 있느냐 하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다. 형사사법의 실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갖 비인간성과 인간적대성에 대항하여 피의자·피고인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고 있는 법 주체임을 깨우치는 진지한 노력을 사법부가 잘 감당해 나갈 때 우리의 형사사법도 이 풍요한 정신 속에서 더없이 정의로와질 수 있을 터이기 때문이다. 형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범죄인은 그가 비록 아무리 극악한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인제나 우리 사회의 일원인 공존인간(Mitmensh)이지 마키나 맹수가 아니다. 이원인 공존인간으로서의 모든 인간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라는 엠네스티 인터네셔널 선언과 더불어 「처벌을 하든 교육을 하든 우리는 인제나 인간을 인간으로 바라보는 눈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 「피테」의 말을 형사사법에 관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하나의 법윤리적 지침으로 덧붙이고자 한다. ㉑



拷問을 위한 특별기획 ①

拷問의 温床, 不法拘禁

金 尙 哲 (필명)

체포·연행 문의센터

「기본적 인권과 형사절차의 개선방향」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일이다. 주최측은 서울지방법원호사회였는데, 종합토론에서 미국의 형사법에까지 정통한 어느 변호사가 본인 표현에 따르면 더러도 「영동한」 다음과 같은 제안 을 하였다.

「무슨 법이론을 말하기보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불들려 갔을 때 이디로 불들려 갔으며 왜 불들려 갔는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누가 불들려 갔 다고 하는 데 도대체 그 기관이 검찰인지 경찰인지, 경찰이면 어디에 있는 경찰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특수한 수사기관인지 그 가족이 이를 사이다는 등 다양한 사실과 노력이 들고 오랫동안 그 화인이 이러한 경우가 있다. 보통사람들은 화인할 길도 없다.

체포·연행에 대하여 국민이 찾아가 호소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관을, 예컨대 대통령 직

속하에 특별사무소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말하자면 구속 「유브즈맨」(ombudsman)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근래 어느 하부모가 자기 아들이 「기관」에 인행되어 갔다는 소식을 듣고 知府를 총동원하여 아들의 소대를 배방으로 알이보고 있었으니 아무 대도 그런 사람은 없다고 한다는 하소연을 들었을 때, 징정부순 체포·인행문의 센터라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절감하게 되었다.

물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은 결코 아니나,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시간시간이 실로 불안과 초초의 연속 일 것이다. 미라시 위 제안은 큰 실효력을 기대할 수 없다. 그의 제안은 이렇게 이

「우리가 구속의 의미에 관하여, 제대로 접어다니던 사람을 접어다니지 못하게 했을 때는 접이간 것이다. 즉 구속된 것이라고 하는 기본적 제를 새우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상태인데도 구속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심대한 규정과 제도를 만들고 헌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선진국의 영장제도 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시 간이 걸린 것이고 상황적인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영장제도도 있는 것은 사실로 하든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은 법률로 하든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은 사실로 잡아가는 데는 경찰사장이 아니냐 하면 수사기관의 화인사라고 해주어야 한다고 명시하는 일이 아니라도 되겠다. 이디서 온 누구의 책임으로 잡아가는지, 왜 잡아가는지, 어디에 잡아놓는지라도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화인사라도 해 주도록 한다면 사후의 구제와 규제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공인히 「모든 국민은 법관의 영장 없이 구속되지 않는다」는 허구적 규정에만 집착하다가 도리어 「모든 국민은 아무리 잡혀 가더라도 법관의 영장이 발부되기까지는 구속이 된 것이 아니고, 따라서 법률상 규

정된 피구속자에 대한 인권보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로 진략되어 비리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형사소송법의 진본가 중한 불이 법 률가들만이 모인 심포지엄 자리에서 발언한 「그리고 우리는 종국적으로 語的이기까지 들렸으나, 실정미 고려한 바에야 오히려 가장 실질적인 제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집회간 사람의 가족들이 밖에서 걱정이 되어 우왕좌왕하는 것은 그렇다치고라도, 집회간 부인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가. 예를 들어 이디서 나온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끌려서 눈이 가린 채 차 뒷좌석에 처박히었다가 창도 있는 밀폐된 방으로 안내되어 수사관들에 둘러싸여 미칠 이고 몇십일을 법관의 영장제지도 없이 침요하고도 끝없는 추궁과 자백의 강요를 당한다면, 실혹에 한대도 안 매린다 한들, 세상 아무도 모르게 죽고 말 수도 있다는 무법천지의 공포를

법적 권력만 내세우면 자칫 폭력을 키우게 된다. 불법수사로 맺어진 「의 열마」를 사본 의 심판대상에서 배제시키지 않으면 사법이 곧 악을 비호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친가지다.

조금이라도 느끼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상태에서 미하나의 충분한 심리적 고문인 것이다.

拷問은「絶海孤島」에서

1982년 7월말 金詩勳이라는 사람이 살인죄로 高法에서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중이던 때 진법들이 전기됨으로써 극적으로 석방되었는데, 풀려난 다음 그는 다음과 같이 고문상황을「동아일보」 기자에게 털어놓았다.

「나는 이 세상을 보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 후독했던 고문을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다. 자술시를 썼던 지난 7월16일 새벽 0시반경에는 이미 나는 봄과 마음 이 탈진상태였다. 작년 7월12일 충북 청원군의 벌목장에서 영문도 모른 채 일행당한 뒤 전주시 진부2동파출소에 감금당한 채 고문을 받기 시작한 지 꼭 나흘째, 그때는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허라도 깨물

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무수히 얻어맞아 온몸이성한 데가 없었고 아무것도 먹지 못해 눈초차 재대로 뜯 수 없었다.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자 다시 곧봉으로 미리와 어깨 등을 마구 때리는 바람에 정신을 잃었다. 「이차피 너는 풀명이 들어 오게 살지 못한다. 시키는 대로 해라」며 겁을 주기도 하고 달래기도 했다. 주위에 있던 형사 5명이 달려들어 양동이 속에 미리를 치바으며 구둑발로 미리와 등을 마구 짓밟았다. 나는 다시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는 밤은 이미 어두웠다. 나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불펜과 종이를 달라고 했다. 그들이 불리주는 대로 지었다. 손도장도 찍었다. 내가 자를 줄 줄어드고 쓴 것 같았다.」

그는 7월12일에 불명 언행되어 계속 파출소에 감금된 채 고문수사를 받았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된 것은 열흘만인 7월21일 0시10분경이다. 그 중간에 한달 전 공사장에서 술주정한 죄목으로 7월14일에 구류5일

의 즉결심판을 받았으나,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것이 아니라 계속 파출소에서 고문수사를 당하였고 구류기간이 끝나고도 물론 석방되지 아니하였다. 法理상으로도 이러한 구류는 別件拘束이라 하여 불법구속에 해당한다.

결국 그는 10일간의 不適法 구금하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여 자기가 하지도 않은 살인죄의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고문은 그 자체가 흉악범죄이기에 비밀이 간직되어야 한다. 밀실에서만 이루어진다. 고문은 공포가 본질이

다. 죽음의 공포이다. 따라서 피고문자는 절해고도에 놓여져야 한다. 외부와의 철저한 차단이다. 법으로부터의 티끌과 같은 보호나마 기대되어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그들의 생생조건은 適法절차가 송두리채 무시되는 데 있다. 무엇보다도 우선 불법의 구금으로부터 시작되기 마련이다. 불법구금의 기간은 일반의 자인법 사건에서보다 이무래도 公安관계 사건에서 장기화될 위험이 커진다.公安사건에 있어서 수사기관은 국가이

의를 위한 사망감 때문이라는 맹신적인 자신을 가진 까닭에 개인의 인적 취해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서 상당부분 자위받을 수 있고 강제적으로 민책 민을 적용하는 법과 때론 일 것이다.

84년 11월27일 화정된 宋氏일거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의 대법원판결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임의 동행의 형식으로 언행되어 지게는 75일, 많게는 1백16일이라는 상상을 넘는 장기의 불법구속을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간으로서 감내할 수 없는 신체상 부당한 대우를 당하였음이 확인되었다.

86년 7월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선고된 金成鶴씨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의 판결은 그가 85년 12월2일 구속영장이 없던 상태에서 72일간을 불법구속된 상태에서 심리적 육체적 압력을 받으면서 수사를 받다가 86년 2월12일에야 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밝히고 있다.

전 民青聯의 장 金權泰씨는 85년 9월4일에 언행되어 계속 구금상태에 있다고 85년 9월26일에야 비로소 85년 9월7일자로 발부된 구속영장상의 구금장소인 경찰서 유치장으로 인

치되어 미물다 당일 검찰에 송치되었던 것이다.

체포·구금의 適法절차

우리의 현실은 두단히 연행하여 가고도 任意同行이었다고 강변되거나 保護措置라는 이름 아래 구속영장발부까지의 잠정적 불법구금이 마치 비정한 제도인양 가능하고 있다. 이러한 비의 무시와 왜곡은 급기야 사건에 따라 수실일씩 영장이 없어도 무작정 가두어 놓아도 벌탈이 없을 정도로 비화되어 있기도 하다.

이제 새삼스레 우리법이 정한 절차를 유미해 보아야 하겠다. 법은 법관이 발부한 事前令狀을 원칙으로 하면 서 현행법 또는 긴급히 구속하지 않으면 안될 중범에 대하여 영장없는 체포·구속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48시간 이내(법원이 없는 시·군지역에서는 72시간 이내)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그 영장도 마치 사전영장인 양 호도시킬 것이 아니라 사후영장의 방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영장집행시에는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영장에는 피의사실과 구속의 사유, 영장 청구자, 영장 발부 판사, 구금장소 등이 명시되도록 되어 있다. 영장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의사실의 진위와 구속 필요성을 신중히 하여 처리할 만료된 법 문 보관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구속사실과 죄명, 구속장소를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구속기간도 경찰에서는 통상 사건에 있어서 10일을 넘을 수 없고, 검찰에서는 10일이외 판사의 연장결정으로 10일 더 연장이 가능하다. 국가보안법위반 등 특정사건에 있어서는 경찰에서 10일, 검찰에서 10일을 한 번씩 더 연장받을 수 있다.

헌법상의 구속적부심사제도는 피구속자가 구속의 적부를 법원 면전에서 제심사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은 헌법의 취지를 제한하여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검사認知사전 및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에서는 그 청구권을 배제하고 있으나, 통상의 사건에서는 구속적부심사절차를 통하여 수사와정에어도 3인의 법관으로 구성된 合議法院의 직접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구속기간중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아무에 없이 보장되어 있으며 가족과의 접견·교통도 법관의 금지 결정이 없는 한 완전히 보장되어 있다.

고문은 범죄로서 금지되어 있으며, 고문 기타 강압에 의한 자백은 법정에서 증거로서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있다. 「法대로」라면 불법구금을 당하거나 고문을 받을 위험이 전혀 없다. 아무리 잡나는 수사기관에 붙잡혀가더라도 늦어도 48시간 이내에는 법관의 영장을 제시받고 변호인과 가족을 만날 수 있으며 목비권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법관의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사건이 어지간 재대로 사법절차에 하여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기호이다. 법관만은 수사기관과 달리 귀과 양심에 따라 나를 재판할 것이며, 법정에서 고문받지 않을 것 만큼은 분명한 상사이다. 게다가 가족과 만나고 변호사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수사관의 취조에 아무 대답도 안할 수 있다! 역시 범죄공기의 비정한 시민이요, 앞으로 법에 있는 복력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위험은 없는 것이

인 이 법정에서 그 내용까지 인정하여야 법정중거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대신(제312조 제2항),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이른바 자술서)는 본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자필서명 사실이 증명되고 그것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야만 인정된다. 즉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13조 제1항 본문).

따라서 경찰에서의 강압수사 후에는 반드시라고 할 정도로 자술서를 작성시키는 관행이 세워지게 되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정부인만으로 증거능력을 잃지만, 자술서만큼은 만일 어찌어찌해서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판단받을 때에는 법정중거로 유효하게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검찰에서도 어찌어찌해서 동일한 진술을 하였다면 그와 동일 내용의 경찰에서의 자술서가 「신빙」할 만하다고 판단받을 수 있어, 결국 자술서의 강요를 통하여 유죄판결을 받아낼 수도 있었다.

이 문제가 金詩勳씨 사건에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그는 명백한 무죄인데 고문 때문에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자술서를 써냈으니, 이 증거서류

아닌가.

만일 고문을 당해본 사람이란, 아니 한민이라도 체포나 연행을 당해본 사람이란, 지금부터 자기의 사권이 사법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는 공적 증거를 눈으로 본다는 사실이 가져다 주는 위안감과 신뢰감이 얼마나 불안정도 록 고마운 것인지를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우리가 민주제도를 수호하고 확충하고자 하는 본질을 가지고도 인초적인 이유는 바로 존엄을 가진 인간으로서 대우받을 수 있고, 법정차에 따르지 않는 어리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리라는 믿음 때문이다.

물론, 인신구속에 관한 우리 제도에서 미비점은 몇 가지 있다. 경찰 등 일선 수사기관에서의 법정 구속기간이 10일 또는 20일까지 되어 자백을 강요하는 취조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니, 이것은 바로 개선하여야 한다. 일본의 경우는 단지 72시간이다. 미국의 경우는 체포후 즉각 治安判事 앞으로 가서 영장발부 여부에 관한 결정과 동시에 보석결정을 받도록 되어 있다. 「증거」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오직 에 체포하여 변호사 임의없이 취조를

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크게 문제된 것이다. 실로 자술서의 증거능력문제에 관하여 회기적 진기를 세울 필요성이 있다. 기이 대법원의 13인 전원 합의는 10인의 다수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증거능력이 있더라도 자술서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보다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엄격한 요건을 요구할 취지는 검사 이외의 수사관의 피의자신문에 있어 있을지도 모르는 기본적인 인권보장의 결여를 방지하려는 입법정책적 고려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입법적 근거와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들을 종합 고찰하여 볼 때,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이따만한 진술내용을 진술서의 형식으로 피의자로 하여금 기재하게 하여 제출한 경우에 위 진술서의 증거능력 유무는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결정할 것이고 제31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즉 법정에서 내

하여 자백을 받고 6시간 후에 처안판사 면전으로 테러간 경우에까지 불법 구금 중의 자백이라고 판결이 내려진 정도이다. 사투의 경우는 체포된 다음날의 종료시까지 법관의 구속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구속피의자 수사에 있어서의 임회권과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이다. 변호사 앞에서는 고문 등 가혹행위가 이루어질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보장된 권리와 제도조차 제대로 향유하기는 커녕 왕왕 무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진보적 제도의 채택을 논하기 보다 차라리 앞사의 「성동한」 제안이 더욱 실득력 있어 보이는 것이 일반의 심정이다.

두가지 價値觀, 두개의 司法觀

金詩勳씨 사건에 있어서의 82년 9월 14일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은 의미깊은 논쟁을 벌였다.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 용까지 시인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다)

그러하지 아니하고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같은 날 같은 조건에서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의자의 진술서가 명칭에 다른 조문을 적용하게 되면, 엄격하여야 할 증거능력의 부여 여부가 사법경찰관의 자의에 의하여 좌우되는 수증하기 어려운 결과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위 대법원 판결은 이른바 대륙법주의에 입각한 우리 법제에서 법의 문리 해석에 입안해 하던 종전의 입장에서 볼 때 분명 회기적인 판결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자술서는 외형상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서류가 아니라 제313조의 서류임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몇가지 요건이 전제되는 경우에는 제312조의 서류와 같이 취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위 판결은 하나의 작은 커닝이었다. 이제 더 이상 경찰 등 일선 수사기관이 경위 어하간 아무리 「자술서」 형식으로 자백을 받더라도 그것은 법정

李炳注
實錄大河小説

智異山

백치산의 수기
최초로 공개

현대사의 뼈저린
이름을 형성시킨
민족의 대서사시!

해방 전후 현대사의 격동기에 韓民族의 고인이 된 중년 무대인 智異山을 배경으로 온몸으로 부딪치고 고뇌하며 좌절해갔던 숭한 젊은 비극의 주인공들이 엮어내는 민족의 대서사시.
* 전7권/각권3,200원

기린원 715-9106
716-9479

증기가 되지 못한 것이고, 따라서 새삼스럽게 「임의의 자술서」까지 받아두는 폐습이 근절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3인의 대법원판사는 다음과 같은 소수의견으로써 역시 문리 해석을 고집하였다.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형사소송의 이상인 것과 같이 한 사람의 범인도 놓칠 수 없다는 것이 형사재판이 추구하여야 할 궁극적 목표의 하나라면, 약용의 우려는 하나의 현실적 가능성 때문에 그 진부를 부인하고 그 속에 담긴 진실을 포기하고 외면할 수는 없다. ... 그 결과는 범인을 알고 놓아 주는 결과에 이를 것이다. 소송절차는 실제적 진실의 발견이

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이다. 이 실제적 진실의 발견은 법관의 자유로운 증거판단에 맡겨진 것이며, 그렇다면 이를 제약하는 제한은 그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이상적임은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최소한의 제한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증거능력을 다시 해석에 의하여 부정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자유심증주의에서 법정증거주의로 돌아가는 것이며, 실제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외롭고 고뇌에 찬 책무를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고 형식적 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기이 될 것이다.

소박한 표현을 빌리면 「있다」는 명문규정을 「있다」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위 판결의 두 가지의 견은 형사절차의 이념, 고문 등 수사기관의 불법과 탈법을 보는 시각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를 드러내고 있었다. 우리는 계속 그 귀추를 주목해 보기로 하자.

不法拘禁을 보는 司法的 시각

서울고등법원 86년 7월 4일 선고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고, 이는 대법원 86년 9월 23일 선고판결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다소 길어 보이더라도 주요 부분만 밝힌 그대로 옮긴다. 판결문을 가지고 흥미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 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구속영장상에는 1985.9.7 발부된 구속

영장의 집행을 받아 같은 날 14시 ○○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이고, 실재는 영장발부일이었던 1985.9.4 ○○경찰서 ○○전용차량에 탑승하여 2일 오후 8시 30분경에 ○○경찰서 유치장에 도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같은 날 21시 00경까지 유치장에 인치되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영장발부일이었던 24일까지는 불명으로 구금되어 있었다. 한편, 영장발부일이 아니라 ○○건물에서 조사받은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잔혹한 고문을 당하였으며,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가족들과의 접견이 금지되고 변호인과의 접견마저 사실상 완전히 봉쇄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던 바

이와 같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상태에서 불명구금과 잔혹한 고문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경찰수사는 단순한 위법의 정도를 넘어서 그 자체 범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러한 범죄적 위법수사의 불법성에 대한 법원의 인지는, 공소는 그 실제적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인권옹호의 측면에서 형사소송법 제 327조 제 4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가 되었어야 할 것이라는 취지이다.

사중기법칙상의 구제제도, 준항고제도, 수사관리에 대한 형법상의 처벌과 징계, 손해배상제도 등 다른 절차에 의한 여재방범이 있는 현 법제하에서 인권옹호라는 측면에서 위 제도들만으로는 미흡하다. 도청에서 검찰발견이라는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이념을 완결히 포기하면서까지 위법수사에 착하였다. 이 유만으로 공소불기하지 않아 한다는 논리가 반드시 성립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실질법상으로도 형사소송법 제 327조 제 328조 각호는 공소기각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풀이되는 바, 논지가 지적하는 위 각 사유들은 위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문상 뚜렷하니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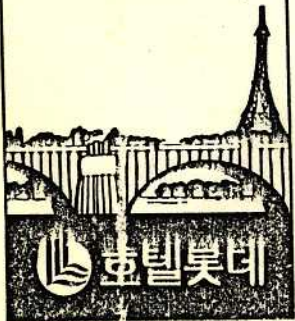
롯데의 名所 (X)

라세느

Loa Seine

韓, 中, 日 食 和 洋 食 을
망라한 最高級
부페 레스토랑.
불갈비, 성신회, 탕수육,
새우튀김, 양고기구이 등
세계 각국의 진미
70여종을
마련하였습니다.
서울의 소문난 한눈에
급이 보면서
최고급 부페를 즐기십시오.

- 價格 : 점심 ₩15,000
 점심 ₩17,000
- 予約 : 전화 771-10
 J.환 047/8



호텔롯데

롯데의 名所 (XII)

카페 가데니아

CAFÉ GARDENIA 正統韓食 부페 食堂

갈비구이, 산적, 문어회, 우설편육 등 최고급 한식 요리 60여종을 망라한 순수 한식요리 부페 食堂. 회식을 위한 別室도 마련되어 있으며 가족과 함께 오시면 예쁜 기념품도 드립니다.

- 價格 : 점심 ₩ 14,000 저녁 ₩ 16,000
- 予約 : 전화 771-10 교환 064

호빌롯데

소를 기자하지 아니하고 실체에나
아가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불법수사에 응징이 없어

위 판결의 논리를 따라가 보자. 불법구금과 구속절차의 불법, 고문 집건금지 등의 불법절차는 확실한 악이고 억지되어야 한다는데, 과연 어떻게 근절될 수 있는가. 절차의 불법이 증거내용에까지 명백한 영향을 주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극소하다. 법관의 영장을 보지 못하였다든지, 영장기재장소와 다른 장소에 구금되어 있었다든지, 변호인은 키링 가족이라도 만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 해서 어떤 진술의 구체적 내용에 직접 영향이 있었다고 입증할 방법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거법의 문제만으로 접근할 때 절차의 불법은 이렇다 할 흠이 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불법수사 공무원의 처벌 문제이다. 하기가 한일합성 이사 金根祖씨를 고문하여 치사시킨 경찰관들은 죄고랑을 받았다. 그리고는 별

우리들의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이 없다. 사람이 무참히 죽기까지 해야만 한다면 진정 혹독한 현실이다. 대한민호사협회 인권위원회는 金勳宰, 金權泰씨에 대한 고문경찰관들을 고발하였으나 아직 이렇다 할 수사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86년 10월 31일자 서울고등법원의 富川경찰서 性고문사건 제정신청 결정문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시사를 보여준다.

근절할 방도는 과인 없는 것인가. 아, 이러한 불법수사를 근절시키면 비인을 놓치게 되어서 과연 범죄사까지 위태로와지는가.

회기적 개선은 과연 불가능한가

법을 세우려면 정의와 형평을 세우야 한다. 법률에 반하지거나 범죄 권력만을 내세우는 자칫 법률 죽이고 폭력을 키우게 된다. 결국 범죄자가 무너진다. 불법수사를 퇴치하기 위한 노력에는 정부권력의 자발적 노력도 소중하겠으나, 언론의 비판감시기능과 아울러 사법의 통제기능이 매우 긴요하다.

사법은 소수자 보호를 통하여 사회 전체의 범죄율을 정당하게 세운다.

『살피건대 우리 헌법 제 9조가 선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근본규범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인신구속에 관한 지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이 형사피의자를 위협하고 특허여성으로서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위와 같은 인권침해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다시는 이를 단념시킬 생각하지 않도록 엄히 응징하여야 함은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이 사전법행은 직무에 집착한 나머지 무리한 수사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하였으나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고 용서를 받고 있으

만일 어떠한 공소제기에 이르기까지의 수사과정이 사소하고 우연적인 불법이 개재된 정도가 아니라 수다하고 의도적인 불법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국가형벌권의 정당한 행사라기보다는 차라리 악의 열매에 가깝다.」

불법구금과 고문의 희생자는 사실 매우 소수의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극소수의 문제에서 정당성의 의심받을 때 전사회의 정당성에 대한 본질적 회의가 팽배해진다. 인간의 존엄은 민주제도의 본질적 요소이며 소수나 다수나 구별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

스베블리
아미네스
신경
안정
제제
제제
제제

518면 / 5,000원

총인구현명의의래

미국의 가난한 소저농의 딸로 태어나 병망하다가 아시아의 중국혁명에 강한 관심을 갖고 모택동의 홍군에 종군, 22살의 나이로 1941~1963년까지 22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중국해방의 반세기에 걸친 투쟁, 그 기원과 발전과정을 서사시적으로 조감하고 포괄적으로 서술한 현대 중국의 기원을 탐구한 책이다. 중국을 지배하는 중세적인 봉건전제, 중국을 침략위협하는 일본 제국주의, 최후의 식주미제 이러한 중국민중의 모욕을 자신의 인생과 밀착된 피어린 체험으로 승화시켜 묘사한 소설이상의 책이다.

思社研
784-5735 5736, 5737



拷問搜查, 人權 최대의 敵

車 舖 碩

(漢陽大法大教授 · 刑事法)

身體自由의 보장은 文明의 척도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신체 자유의 법적 및 사실상의 보장상황은 그 사회의 문명수준의 바로미터라고 들 한다. 노예와 자유인과의 구별표지는 바로 신체의 자유의 존부 및 그 보장정도에 있다. 재산의 자유, 정신의 자유 등 기타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비롯한 모든 인권은 신체의 자유를 전제로 하여 비로소 그 보장이 가능하고 또 의미있게 된다.

오늘날의 문명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어떠한 국가권력으로서도 또 국가의 안보마저 포함한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받들고, 그 불기초로 하여 기타의 모든 인권을 고도로 보장함은 물론이고 일반인에게 그렇게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느끼게 해야 한다.

인간의 본질적인 존엄과 필수적인 인권보장을 이룩하지 못한 국가는 그 존위의 의미를 상실하며, 따라서 그러한 국가의 안보라는 명분은 무의미하다. 동시에 그런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는 물론이고 국가 자체의 형태도

마땅히 국민의 지형의 원리에 따라 개체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중대한 인권도개인 내지 사회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의 수사에 있어서는 부득이하고 필요 최소한도까지는 오직 저명한 절차에 의하여 일정한 제한을 아니받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헌법과 정당한 법률이 정한 절차정차에 따라 강제수사권이 발동되는 경우이다.

그런데 여기에 수반하여 반부득이한 경우 사법도 감시수사권을 남용하여 적법의 허울 밑에서 권력이 난무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곧 不法搜查이다. 이러한 불법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할 수 없으므로 국가 및 당해 수사기관은 응당의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보다도 더욱 심각한 권리의 침포가 바로 無法搜查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수사권의 남용이라기 보다는 수사활동 자체가 아니다. 헌법을 비롯한 중요한 법률이 국가 존립

의미의 필수적인 조건으로서 미립한 법적 절차를 파괴하면서까지 지나친 속한다. 이 사태가 빈발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문명국가의 최대치부를 보하는 것이고 아만국가로의 퇴보의 미하며, 따라서 그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전자 즉 불법수사의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구속의 남용을 들 수 있고, 후자 즉 부당수사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는 고문행위를 들 수 있다. 양자는 모두 주로 수사단계에서 발생하는데 악폐라는 집과 잔혹한 고통을 가한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동시에 논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강제수사권의 한계

수사과정은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밀행성·강제성·기동성·탄력성을 수

고문 등은 수사기관의 권력남용이 아니라 무법행위이다. 이것이 있으면 진실이라 하더라도 마땅히 배제되어야 한다. 이것은 헌법적 요철이다.

만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비밀성의 요청 때문에 그 권력이 남용되어 제3자에게 수사공개가 불히 되고 심지어는 변호인과 피의자의 가족들과도 절단된 상태에서 수사활동이 진행되기도 한다. 게다가 강제성·기동성이 요청된다는 이유로 법적 규제, 즉 법의 적용을 방불케 하기도 한다.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또 공판정에서의 신체화보를 위한다는 형식적 이유로 피의자를 구속되어 사실상 조의 재체로 취급되고 있다.

신체구속만으로도 강력하고 준엄한 고통인데 그의 진술을 강요하는 각종의 물리적 제재가 행하여지는 수도 있다. 그 결과 유체적 심리적인 어업상태에서 피의자의 자기방어는 불가능하게 되고, 따라서 국가로부터 일방적으로 유죄의 코너로 몰리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수사과정은 수사권의 남용을 유발하여 피의자 등의 인권피해를 초래하는 지나나한 힘이 난무하는

무대라고 해도 과장된 표현은 아닐 것이다.

국가권력의 물리적 강제는 모든 사회통제방법 중에서도 「최후의 수단」(ultima ratio)이어야 한다. 물리적 강제의 상용은 인권유린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그 강제력의 일반적 효과의 감쇠, 나아가서 직접보다 큰 물리적 강제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도 크게 경계하여야 할 일이다. 형벌을 통한 물리적 강제력에 의한 지배가 常態化된다는 것은 권력의 위기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다. 어떤 사회라도 올바른 방향의 질서유지는 권력의 대상인 국민의 그에 대한 정통성의식에 의존하여야 하고, 또 그의식의 핵심은 국민의 진심에서의 동의 내지 합의라고 할 수 있다. 국가권력의 단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권도 그러한 한계를 의식한 발동이어야 한다.

구속영장제도의 의의

기부권의 초서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체의 자유권은 수사권의 과잉내지 남용을 억제하여 피의자의 정당할 신체

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임격한 조건의 아래에서 의적으로 인정되는 법

관의 구속영장에 의해서만 그 제한이 허용된다. 따라서 구속영장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마그나카르타적의의를 치니고 있다. 실제법상으로 죄형비정주의에 의하여 형벌권 발동요인이 엄격히 제한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의미가 형사절차상으로는 영장주의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장제도도 미국법의 영향 아래에서 채택된 것으로써, 수사기관의 강제권의 남용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하여 그 발부의 구체적 조건을 일반적으로 범용으로 정해 놓고, 수사기관의 영장구사안이 그러한 일반적 억제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법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시민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려고 한다.

그 일반적인 억제조건으로서서는 피의자의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합리소송법 201조)의 존재를 필요로 하고, 또 구속할 「필요성」의 요건(동 201조 1항, 70조 1항 및 2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공

하다.

동시에 법원의 재판동향도 인권옹호의 관점을 현저히 약화시켰기나 또 는 포기하여 검찰 경찰 등의 커안유지적 요구에 종속하여 유착관계를 심화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스럽다. 이 때문에 인권보장의 보루라고 할 법원의 본래적 기능은 소실되어 가고, 따라서 재판의 권위가 침추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느낌이 든다.

구속영장의 발부행위도 일종의 법원의 결정이다. 법원의 재판이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소명자료에 의하여 내리지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실질적으로 구속결정은 단기자유형을 결정하는 재판이나 기의 다른 바 없다. 따라서 실질법상으로는 당사자의

구부법원을 지지 않고(형소법 37조 2항) 검사의 신청서와 소명자료로서서

민재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관은 형벌을 선고하는 태도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기의 유죄심증형성에 가까운 증명에 이를 때까지 수사기관에 기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런 뒤에도 의심스러운 때에는 영정청구할 기각하여야 한다. 검사로부터 청구된 구속요청건수의 거의 94% (1985년의 「사법연감」 284면)가 발부되고 있는 현황에서 볼 때에는 영정청구사안에 관한 법원은 재판기능을 기의 포기하고 종속적인 영장시명기관적 역할(rubber stamp)을 하고 있다는 말을 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소권소법이나 사안의 정미성을 고려하여 공권력발동 일반에 요청되는 「비교의 원칙」과 「상당성의 원리」에 따라 구속의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상의 제 요건을 고려함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법관의 양심에 따르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거하여 구속으로의 심증형성을 국민에게 납득시킬 만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만약 구속의 정당성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도 「무죄추정」의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영장내용과 그 집행에 관해서도 여러가지의 특정한 조건을 붙여 수사권의 남용을 억제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 경찰력의 비약적 증강과 경찰활동의 에스컬레이션 때문에 구속이 정치적 의도에서 치안정책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듯한 실정에 비추어 영장주의의 의미를 재음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장기대량구속체제의 화림과 짙은 느낌 을 주는 작금의 동향은 대량구속 대량기소 그리고 체벌주의에 의한 처안유지를 위하여 신체구속이 활용되는 듯

생각된다.

비밀영장이라는 관행

또 최근에는 실무상 비밀영장의 신명부라는 관행이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비밀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에는 피의자의 인적 사항과 피의 사실 등이 법원의 영장발부대장에 일련번호 순으로 통제되고 난 뒤에 당직 판사에게 사인이 배당되어 영장이 발부되는 데 대하여, 비밀영장의 대공 사건은 일련번호에만 기재되고 피의자의 인적 사항과 피의사실은 기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검사가 직접 수사부장판사에게 청구서를 갖고 가서 영장발부를 받는 것이 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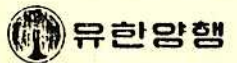


간장 건강을 위한 새로운 정보!

간해독은 물론 회복까지

해독 회복간장약 리카바

●효율성: 100명/27,000인



셀감이면 신경통은 치료됩니다



신경통·류마티스·관절염에
셀감
표: 소매가격: 10원 3,500원
한독약품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요건의 결여는 구체적으로 볼 때 수사목적으로부터의 일탈, 구속요건의 완화, 구속영장의 남발, 구속이유로부터의 일탈, 구속요건의 판단에 있어서 법원의 수사기관 판단에 의 종속 내지 협조, 나아가서는 법원 자신의 수사관의식이 제철화된 것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영장주의의 제도적 의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 사법권 독립 내지 법관의 독립이 철저되어야 한다. 인권옹호자로서의 법관이 수사관의식에 젖거나 이들의 후진적 역할을 함으로써 사법행정권의 종속성을 탈피하

지 못한다면 영장주의의 의의는 물락하고 만다. 법관과 수사기관과의 유착상황 내지는 법관의 사법행정권에의 종속성의 보편화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요소들이다.
(2) 수사관과 내지 권력계층 사이에 「법치형」의 골·구속·처벌과의 격결이라는 전근대적인 한국적 인권감각이 분식되고 강제처분권이 수사관에게 있다는 일반의식을 극복하여야 한다.
(3) 영장은 신체구속의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법관이 그 발부에 있어서 구체적 정당성을 독립하게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다는 양심적 자각이 필요하다.
(4) 보다 지반적 요청으로서 는 지배

개충을 비롯한 일반국민의 철저한 민주적 인권의식의 각성과 불법에 대한 무엇보다도 국민일반에 아직까지 깔려 있는 무법적, 정치권력자·입법자·법 적용자·법 집행자에게 있을 수 있는 법치적 인권감각의식의 극복이 바로 구속에 관한 영장주의의 실요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해둔다.
고문과 대법원의 불확실한 태도
우리 헌법은 고문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고(제11조 2항), 형법은 고문을 범죄로 규정하여 고문을 자행한 수사공무원 등에 대하여 형법적 제재

이라고 한다.
아마 공안에 관계되는 것 같은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신청과정 및 발행과정을 보완상 비밀로 하고 또 그 발부를 보다 확실하게 하는 취지로 행하여지는 듯하다. 그 신청 발부의 과정을 비밀로 함으로써 증거 및 신체 확보가 보다 철저해질 수 있을 것이므로 수사목적 유효성으로 달성할 수 있고, 또 비밀영장이라고 불림으로써 법원의 협조적 태도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으므로 영장발부를 신속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아무리 비밀영장이라고도 집행시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 빈명할 기회를 준다(209조, 72조), 변호인 및 가족 등 일정한 자에게 피의자진명·구속일시·장소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209조, 87조, 30조 2), 만약 이 요건의 이행을 결여한다는 의미로서의 비밀영장이라면 중대한 불법이 행하여지는 것으로, 당연히 그에 의한 구금은 위법이고 따라서 그 구금을 통하여 얻어진 증거는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 구금의 불법은 구속적부심사에서 구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비밀영장」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법의 적정절차이념과 모순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성을 자아낸다면 그 관행은 폐지함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법의 적정절차의 이념에서 볼 때, 다른 형사사건에 비하여 차별 취급을 한다는 것과 미리 관계자에게 알려서 방어의 차질을 빚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되지 않을 바가 아니다.
영장제도는 순수한 형사 재판 실현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고, 또 그 목적으로 이용되는 구속은 불구속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장의 신청 및 발부 또는 기타의 강제처분이 현존 지배절차의 유지를 위하여 반대적 정치활동이라는가 독립 내지 기타의 사회변리적 기업활동이나 사회적 부패현상에 대한 저항운동을 억압하는 데 이용한다면 중대한 비판 대상이 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체제 아래에서는 모든 국민은 각자의 사상·신앙을 갖고 정당한 법질서 내에서 사회적·정치적

활동을 할 자유를 누린다. 따라서 법원도 개인의 사상·신앙이라든가 여가에 따른 사회적·정치적 활동 그 자체를 제재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활동과정에서 수단으로서 이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즉 범죄시되는 행위에 대해서만 상당한 절차에 따라 제재를 가하는 임무를 진다. 따라서 특정한 친정부적 사상이나 활동을 제약을 통하여 강요하는 것은 위헌적인 사법활동이라고 하겠다.

영장의 정치적 운영

신체구속 등의 수사절차가 정치적 치안정책적 운영이라는 것을 보이는 특징은 다음의 두개의 경우이다. 하나는 법원·검찰의 재판이나 처분이 헌법 및 형소법상의 이념에 비추어 예상되어야 하는 것과 모순된다는 합리적인의심을 품게 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그 처분이나 재판이 법정된 요건을 결여하고 있다는 의심을 품게 하는 경우이다. 여기에는 수사의 형식적 조건을 결이하거나 형식적 조건은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 헌법상의 직접적차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하게

를 가하도록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고문에 의한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문은 공무원상 공무원의 징계사유 또는 국가배상법 내지는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의 사유가 된다.

이 외에도 헌법에는 무죄추정의 권리, 불이익진술 거부권, 강제자백의 증거능력의 부인, 자백만으로 유죄 인정의 금지, 영장에 의해서만 강제 처분 가능성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고, 형사소송법에는 이것들을 구체화하는 규정들이 많다.

이와 같이 헌법과 법률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고문의 절대적 금지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문에 관한 기사가 종종 신문의 사회면을 장식하고 고문을 이유로 자백의 증거능력 내지는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립된 관점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법인을 김기하고 범죄를 단속하는 당국에 의하여 고문이라는 「범죄」가 20세기 최후반의 오늘에 와서도 행하여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나 양상이 전일에 비하여 더 심화되면서

서 변질되고 있다는 데 「한국적」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진단된다.

대법원의 몇가지 판결들도 그 문인을 통해 고문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경찰에서의 고문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검찰에서의 자백의 임의성을 인정한 것이 더러 눈에 띈다.

어태까지의 대법원판례의 추세는 사법경찰관의 신문서에 고문 등이 있었다는 의심이 있으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또한 피의자가 직접 자술시형식으로 작성한 것이면, 수사관이 그 진술을 받아 작성한 것이면 그 진술을 기재한 서면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또 검사 앞에서 피의자의 자백은 경찰에서의 강압적인 분위기가 연속된 상황 아래에서 행해졌거나 검사실에서 고문 등을 행하였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방향을 취하기 시작한 듯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신빙성도 그러한 관점에서 부인하려는 듯하다.

그러나 대법원의 태도에는 피의자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등이 고문 등

왜 고문이 행해지는가

고문의 빈발성 외에도 최근에 와서 그 의미가 질적으로 상이한 고문이 가하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의 문시된다.

특히 그 문이라고 할 때는 주로 범죄수사과정에서 범인과 증거를 발견·확보하기 위하여 육체적·정신적·심리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가리켜왔다. 즉 사법적 고문이다.

그러나 중세 내지 근세 초두의 봉건사회 내지 절대군주사회의에서, 그리고 나찌시대나 식민지통치시대에는 이교도, 정치범 및 이민족 등에 대한 종교적·정치적 보복으로서, 또는 통

치의 수단으로서, 반대의사를 말살하기 위하여 고문이 가하여졌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것을 정치적 고문이라고 한다.

비록 정치적 고문이 아니고 사법적 고문이라 하더라도 고문은 그것이 행하여질 수 있는 풍토에서 그 여건이 적어진다. 그사라나 정보수집관리들은 자백회득을 위하여 고문도 불사하거나, 고문 정도는 극히 당연한 관행사의 일부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기기에다가 중수죄죄 기타 피해자가 뚜렷하지 않은 「밀실범죄」에서는 자백의 증거가치를 높이 여기기 때문에 자백강요에 호소하게 된다. 또 권력체제에 대한 도전행위에 대해서 고문에 호소할 권한이 당연히 있는

에 의하여 행하여졌다는 의심이 생긴 경우, 일관하여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취지인지, 증명력을 부인하는 취지인지 명확하지 않다. 또 설령 전자의 경우라도 그것을 배제하는 이유가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상황 아래에서 행하여진 것이므로 허위가 들이갈 우려」가 있다는 취지인지, 수사기관의 고문 등의 위법행위 때문에 자백채취과정에서 위법이 있으므로 이것을 배제하기 위하여 증거능력을 배제한다는 취지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고문을 보다 철저히 철폐하려는 의도라면 고문 등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증명력이 아니고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취지로 처리하여야 한다. 또 이 경우에도 고문 등의 의심이 있어도 진실성이 있으면 허용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허위배제설의 관점에서가 아니고, 고문 등의 위법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위법은 용서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은 위법배제설의 관점을 취함이 타당하다. 근자에 와서 대법원의 태도는 자백을 둘러싼 인권옹호의 방향으로 상당히 진보적이 라고 평가되지만, 보다 대담하게 위법배제설로도 약했으면 하는 것이다.

것처럼 여기는 수사공조가 만연되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뿐만 아니라 소송기술상 수사관 내지 정보관리와 피의자가 단독대좌한 밀실에서 행하지는 고문이라는 불법의 존재는 그 입증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것이 고문을 보다 부채질한다. 소송법상 기증체념은 법원에 있다고 하나 증거 제출의 부담을 피고인이 지게 되고, 또 소송법적 사실에 대해서는 소위 자유로운 증명이라고 해서 고문 부존재 사실의 증명이 법원에 게 보다 용이하다는 것도 고문의 배양원인이 된다.

게다가 고문에 의한 자백으로 수집된 증거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다는 법리가 고문을 간접으로 증용하는 걸

鮮度 第一

건강음료로 마시는 우유는 첫째 신선해야 합니다. 해태우유는 신선도 제일주의로 인제나 신선한 우유를 무장에서 가깝까지 공급합니다.

그래서 해태우유는 좋습니다.



해태우유

과를 낳는다. 미국법에서 발전된 소위 「毒樹의 果實理論」(Doctrine of the Fruit of the Poisonous Tree) 즉 고문과 같은 불법에서 얻어진 증거로부터 얻게 된 제 2차적 증거도 증거능력이 배제된다.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사법실정도 고문을 촉진하는 원인이이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일반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는 명확하지 않으나, 실무에서는 압수물이 고문에 의한 자백의 결과이나 이따미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것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문에 의한 자백은 법적으로는 유효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자백에 의거하여 획득한 증거는 유효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태도가 자백획득을 목적으로 고문이 가하여질 소지를 형성한다.

이와 같은 태도는 대륙법의 犯人必罰의 실체적 진실주의 및 죄권주의 소송관의 유물에 기인한다. 그러나 고문의 금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의 근본적 요청이며 형사절차의 대원칙이다. 고문은 헌행 헌법절차 및 세계적 인권문명규

범에서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처벌을 위한 진실발견은 법의 정당절차의 보장범위 내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고문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고문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면 서, 다른 한편으로 그 자백에 의해서 수집된 증거의 법적능력을 허용한다. 민결국 고문금지 및 그로 인한 자백의 증거능력 부정이라는 헌법 및 형소법의 정신과 취지는 유명무실화한다. 형법 및 특가법 등에서 고문한 자는 엄벌을 받게 돼 있고 또 행정법상 중징계를 받아야만 할 것인데도 범죄적 재를 가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사실도 권력주변에 대한 법적 규제의 공백을 의미하는 것으로 느끼게 하며, 이것 또한 고문행위의 배양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고문방지·억제책

형사사범의 민주화요청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압권보장이라고 할 때, 고문은 인권중에서도 기초를 이루는 신체를 말살하는 것으로서, 민주지형사절차에 대한 최대의 독소

이다. 고문에 의한 자백이 형사재판의 실제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다면, 이는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민주성의 形鍾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고문을 사전에 방지할 효과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첫째는 수사·정보수집의 과학화를 들 수 있다. 수사의 과학화, 수사조직의 과학적 효율화, 수사기술의 현대화를 들 수 있다. 수사의 과학화에 의해서 자백획득의 폐단은 지양될 것이고 자백취득을 위한 고문도 감소될 것이다. 이러한 수사의 과학화는 법이론이나 적용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개선과 예산의 뒷받침이 수반되는 국가정책상의 문제이다.

둘째, 수사·정보수집관리의 헌법 및 형소법이념에 투철하고자 하는 민주적 자질의 향상이다. 헌법과 형소법은 무죄추정의 법리를 천명하고 법의 정당절차의 보장이념을 법인필법적 진실주의보다 우선시키고 있다. 법의 정당절차의 보장 및 무죄추정의 권리를 향유하는 피의자에게는 고문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열 사람의 죄인을 놓치는 일이 있더라도 한 사람

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리의 인간의 존엄성이 범죄행의 최고규범이라는 정신을 관계관료에게 고취시키는 과제가 중요하다. 즉 민주적 수사관을 고취시키는 일이다.

세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어떠한 것이라도 증거능력을 재판상 배제한다는 기본원리를 사법관으로 하여금 실천하게 하는 과제가 또한 중요하다. 증거법의 발달과정에서 불법행위 증거주의 시대에 고문이 가장 성행하였고, 자유심증에 따른 진실주의 원리가 지배하는 때에는 그것이 폐지·감소되는 길을 걸었다.

오늘날은 범죄발명방향으로의 진실주의가 아니고, 관리들의 증거체취과

정에서 위법이 있으면 실령 진실에 일치하더라도 증거로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이 지배하는 시대이다. 사법부의 이 방향으로서 대담한 태도 전환이야말로 고문 등의 위법이 제기될 수 있게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수사에 열중한 나머지 그와 같은 위법을 또한 경유하는 그 위법을 이유로는 소송법적 요구가 좌우되지 않는다」는 식의 판결은 지양되어야 한다.

고문 등은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이다. 무권한·무법행위이다. 이것 이 있으면 그로 말미암은 증거가 진실이라 하더라도 마땅히 배제되어야 한다. 이것은 형소법의 상위규범인 헌법적 요청이다.

네째, 앞서 논한 것처럼 우리의 대법원도 최근에 와서 인권중중 쪽으로 방향전환을 시도하는 느낌을 주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지만 남용된 권력에 대해서는 보다 대담하게 엄정한 철폐를 가하는 진보적 태도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진실주의라는 형이상학적 신념에 집착한 것이다. 「법정적 진실치의 실현에 철저하기만 하면 진실은 발현된 것으로 인정된다」는 태도를 지향할 것 바란다. 이것이 사법부를 하여금 문명된 세계수준으로의 권위와 존엄을 지니게 하는 방향이다.

다섯째, 고문 등의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수사·정보관리에 개혁사제, 행정제재 및 민사제재를 철저히 실현함으로써 권력 스스로의 준법을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불안한 중년기 건강에 자신은

유니코



- 혈관경화 및 촉진 생성억제
- 콜레스테롤
- 순환기 장애개선

유니코
한일약품

李炳注
實錄大河小説

智異山

〈빨치산의 수기〉
최초로 공개!

현대사의 뼈저린
아픔을 형상화한
민족의 대서사시!

해방 직후 현대사의 격동기에 韓民族의 고인이 된 중환 무대인 智異山을 배경으로 온몸으로 부딪치고 고뇌하며 좌절해갔던 숱한 젊은 비극의 주인공들이 위아래는 민족의 대하 드라마.

● 17권/각권 3,200원

그린인 715-9106
716-9479

사법 혁명시대"라고 할 만큼 피의자의 권리보장이 확충되었다. 따라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배제 원칙이 철저히 확립되었다. 고문에 의한 진술은, 그것이 물리적인 힘이 가하여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심리적인 위촉상에서 얻어진 것을 포함하여 인정 보정을 위한 유행적인 절차를 위반하여 얻어진 것이라면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정부기관의 위법적 제라는 관점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정부가 그 스스로의 손에 의해서는 이미린 사소한 아이라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국가를 가장 훌륭한 문화적 존재로 기성시키려는 노력은 여기에서 간취할 수 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이상을 실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형사 절차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단계인에도 불구하고 고문적 절차의 조명이 미흡한 소위 「암흑의 계곡」이라고 불리울 수사 단계를 오늘날처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은 결코 문명된 사회가 취하여야 할 윤리적 태도의 표명이 아니라

복합, 범죄행상의 불법 등의 잠재된 상을 제기하는 과제와 함께, 국민의 의식구조상에 정착돼 있는 불법 내지 무법상태를 씻어버리고 진정한 법의 식으로 무장하는 과제도 중요시된다. 절대군주정치 및 외세에 의한 강권 정치 속에서 형성된 법의, 권력의 독선적 운영, 권력의 불평에 대한 저항력을 잃은 애속근성 및 권리의 무의식의 결여 등은 시급히 청산해야 할 국민적 과제이다. 한편으로는 자 기자신에 대한 불법의식과 대결하면서 다른 한편 모든 사회악과 불법에 대한 끊임없는 내면적 싸움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정의사회를 구축한다는 강인한 국민의식의 형성이야말로 당면한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

과치하여야만 고문 등의 불법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여섯째, 절대 권력에 순종하는 원리 아래에서 있을 법한 권력과 사법권의 유착 현상의 해소가 고문 등을 철저히 도록 사법부에 기대하기 위한 진제조치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곱째, 수사 과정에 있어서 변호인의 피의자의 필수하는 위법수사를 억제하는 가장 현실적인 효율적 방안이다. 피의자 심문과정 및 기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을 필수적으로 참여하게 하려는 것은 그 그 하인 위법수사를 억제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동시에 변호인 참여없는 수사 활동에서 얻은 증거는 배제된다고 한다면 위법수사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불구속 수사 원칙 및 무죄의 추정 원리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하여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하거나 보석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고문 등의 위법 유예에 하는 효율적 방안임은 강조할 필요도 없다. 고문은 인권 최대의 적

다 하더라도 이 지상에서 영구히 발달되어야 할 것이다. 잔인한 고문에 의하여 범죄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느끼게 되는 공포와 무고한 자의 처벌 및 보편적 인권의 유린 정도보다 바람직하다. 위법한 수사 내지 관권의 억제로써 당해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관점은 물론이고, 여기에 덧붙여 정부의 廉潔性 및 세계적 문명수준에 알맞게끔 그 활동의 합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준법의 모범을 보인다 하는 점도 중시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위법수사 억제에의 요청의 강도는 거의 절대적이라고 하겠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에 이르러 민권운동의 정기를 맞아 소위 「형

MR. 심금

현실에는 예사...

뭍쳐야!

휴~우 품이었구나

대로 때문에 너무 칭야해 저셨나?

어번~ 칭치트시고 감사요. 우리말에 좋은 단어들과 EPA가 등불 들어 있어요

*EPA: 한때종의 물게스대를 동도를 청정수준으로 낮추어 주는 불포화 지방산 성분과 노화를 방지하므로 성인병 예방에 좋습니다.

남편사랑, 참치사랑 - 동원참치큐캔

고문을 당해 본 사람치고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후유증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은 없다. 신체 여건에 따라, 고문의 강도와 지속도에 따라 증상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고문은 예외없이 사자(死者)나 병자를 만들어냈다. 서울대 박鍾哲(박종철)이나 한일합성 이사 金根祖(김근조)는 고문 도중 목숨을 잃은 경우지만 다행히 문 도중 목숨을 잃은 경우지만 다행히 목숨만은 부지한 채 고문실에서 나온 사람들도 대부분은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다. 악몽의 터널은 고문을 받는 순간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다.

고문 받은 지 1년이 넘도록 물론만 보면 구역질을 해대는 이가 있는가 하면 집단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이도 있었다.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전기고문의 기억이 되살아나 갑작스럽게 놀라고 식은 땀을 흘리는 이도 있다. 고문이다.

고문은 비단 당사자만 죽이는 것이 아니다. 자식이 죄인이 됐다는 데 충격 을 받아 몸져 누운 어머니들이 있으며, 사위가 「살인자」라는 소식을 듣고는 시

「제복」 폭력」에 울든 안 삼희씨



고문의 차에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의 고문을 나눠 갖는 사회에서 고문이 시달린다

롭시름 앓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만 장모도 있다.

고문 후유증은 장기화, 만성화, 완치 불능 따위의 지명을 초래한다는 데서도 그 심각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일반적 증상으로는 두통, 신경통, 소화불량, 불면 증 등이지만 심할 경우 시력 및 청력감 퇴언어장애, 조울증, 환청(幻聽) 기억력 및 집중력 상실과 같은 정신분열 증세도 나타난다. 더군다나 자기 잘못으로 얻은 병도 아니고 저항이 전혀 불가능한 제도적 폭력에 당해서 겪는 고문이다. 피해자가 느끼는 울분은 그래서 더욱 클 수밖에 없고, 고문이라는 악몽은 쉬 떨쳐지지 않는 것이다.

고문 폭로하는 용기있는 사람들

그러나 모든 고문 피해자들이 체념적 상태에서 앓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엄청난 보복이 있을 것이라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고문 사실을 폭로하고 고발하는 용기있는 이들도 적지 않다. 멀리 10월 유신때 수사기관에 끌려가 온갖 고초를 겪고 나온 야당 의원들이 75년 2월 고문폭로대회를 연 것을 비롯해,

拷問과 造作 ⑥ 후유증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들

金 和 桂 著 신인보 신관로 원부 키치

87년 1월 박鍾哲(박종철) 고문차사 사건을 계기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의 고문공청회, 2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의 고문사례 보고회 등에서 터져나온 「나」의 고문 경험」들이 이들의 의기를 잘 대변해 준다. 「고문과 조작」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된 경주당구장은 여주인 피살사건의 주인공 朴虎泳(박호영)은 개인적인 고문추방운동가로 번신했다. 형을 사방장 출신인 박씨는 자기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고문을 애기를 듣고 여론화하는 데 애쓰고 있다.

고문의 후유증 가운데 가장 극심한 경우는 역시 「매일 죽어가는 사람」일 것이다. 물론 고문 현장에서 죽지 않는 한 사망원인이 고문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주변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위를 살펴볼 때 의심이 가는 사람들이 있다.

김기철씨. 1967년 10월 부산에서 발생한 근하군 살해사건의 「제2내 지 지 빔」중 한 사람으로 체포되었다가 「1심에서 사형, 항소심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4백47일만에 출소했다. 1

938년 생. 69년 7월26일 대구교도소를 나와 정식혼인도 못하고 1980년 3월15일 사망하기까지 그의 여생은 산다기 보다는 서서히 죽어갔다고 밖에 달리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가 근하군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연루된 것은 「법에 복수하겠다」는 앙심을 품은 친구 때문이었다. 그 친구는 근하군 사건을 잘 알고있으며 검사를 만나 연극을 피웠고 공범으로 김기철씨 등을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영문도 모르게 김찰에 끌려가 「자백」을 강요받은 김기철씨는 완강히 「범행」을 부인했다. 무지막지한 고문수사를 당해서도 그는 한번도 굽히지 않았고 그 때문에 몸은 더욱 상했다.

동거 5년에 소생없이 헤어져

출소 이후 김기철씨의 체력은 눈에 띄게 떨어졌다. 목의 근육이 비틀어지고 뻣뻣해져 마음대로 돌리기가 힘들었다. 목을 젖히려면 옷몸 전체를 젖혀야 했다. 「삼촌이 휴가 나오면 굶은 판딱에 매달려 턱걸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힘이 빠져버

요. 팔씨름을 하자고 졸라 손을 잡아보면 아귀 힘이 해가 다르게 약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카 김창석씨의 말이다. 몸만 약해져 가는 것이 아니었다. 초단이었던 그의 바둑 실력도 나날이 줄어드는 것 같았다. 질 때마다 정신집중이 안된다고 투덜댔다.

1972년 무렵 기철씨는 한 여자와 만나 동거생활에 들어갔다. 기철씨보다 여섯살이나 나이가 위인 이웃집 과부였다. 그는 범천2동 산동네에 구멍가게를 펴놓고 있던 과부의 집으로 거처를 옮겨 전남편의 소생인 사내아이와 함께 살았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여자는 동거 5년만에 서울로 이사 간다며 부산을 떠났다. 기철씨가 같이 올라가 살자고 졸랐으나 이번이 거절당했다. 두 남자가 헤어진 이유는 알 길이 없었다. 기철씨의 큰 형은 「처음엔 사이가 좋았다가 차츰 벌어지더라」면서 「아마 기철이가 모진 신문을 당하면서 그것을 못 쓰게 된 때문이 아닌가」라고 했다. 아이를 낳아 본 여자와 5년간이나 살았는데 출산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냐는 것이다.

기철씨는 1979년 가을 봉계동양

崔씨의 기억에 의하면 1976년 어느 날 정씨는 짐 못미쳐 있는 가게에서 사이다를 마시다 말고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며 그대로 쓰러졌다. 그리곤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사인은 심장마비, 그의 나이 42세였다.

경기도 시흥군 농협 청계분소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구속돼 교도소에서 복역중 풀려나 사망한 李泰成씨(당시 38세)도 고문 치사의 가능성이 큰 사람이다. 이 사건은 서울구치소에 있는 사형 확정수 가운데 가장 오래 살고 있는 崔在萬씨 때문에 더욱 유명해졌다. 이 미 여러차례 기사화 되었으므로 사건 개요는 생략하고 李씨의 사망 관련 부분만 보기로 하자.

사건이 발생한 것은 1981년 2월 6일 밤에서 7일 새벽 사이, 무기형이 확정된 것은 82년 4월13일이다. 李씨는 청주교도소에서 수감중 병세가 악화, 형집행정지로 바깥에서 치료를 받다가 83년 5월 사망했다. 李씨는 이보다 앞서 폐결핵 증세를 보이고 있었고 용집중으로 10여년간 인하다가 사건 발생 1년 전에 신병으로 그만두었다는 것이 경찰조서에도 나타나 있었다. 향

경비원 자리도 그만 두었다. 몸이 더 이상 버겨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드러 누웠다. 몸은 완전히 쇠약해졌다. 밤만 되면 가슴이 쑤신다고 했고, 기침을 자주 했다. 한번 기침을 시작하면 좀처럼 끝날 줄 몰랐다. 1백m쯤 떨어진 큰형 집까지 오는 데 대여섯번이나 쉬어야 할 정도였다. 헛소리가 자주 새 나왔다. 이듬해 봄 그는 병석에서 자주 하던 말처럼 「한번 멋지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숨을 거뒀다. 가족들은 50m밖에 나가지 않은 시체의 비틀어진 목과 내려앉은 어깨를 바로 피고 엄습을 끌었다. 이껏 주지와 가슴 전체에 울긋불긋한 멍같은 반점이 퍼져 있었다. 밤만 되면 아파서 못견디겠다며 술로 고통을 달래야 했던 바로 그 반점이었다.

기철씨의 어머니 김필선씨는 아들의 출감을 녀달 앞두고 53세의 나이에 숨을 거두었다. 아들이 구속되면서 기절, 시름시름 앓다가 무죄화정의 순간도 보지 못한 채 이승을 하직한 것이었다. 부친 김우근씨도 아들이 죽은 뒤 81년 7월 뇌출혈로 사망했다.

소이유소에서도 李씨는 「인간으로서는 이겨내지 못할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 증거로 가슴의 상처가 너무 커 7개월이 넘도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고 했다. 법정에서는 상판을 보여주면서 호소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절차, 즉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그 이유서에」 한을 미치고 죽을 것 같다」고 했다. 최후를 예견한 듯한 말이다. 폐결핵을 앓고 있었다는 주장, 인간으로서는 이겨낼 수 없을 고문을 당했다는 제3자들의 증언, 이것들과 李泰成씨의 죽음을 관련시켜 보면 사인을 둘러싼 의혹은 명확해질지도 모른다.

정신적 압박받고 이상증세 보여

김기철씨의 형 이만씨는 동생의 무죄 확정 뒤에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무료 변호해 준 변호사의 말투에 가까울 정도로 있었지만 자신이 「살아 나온 것만 해도 다행이다. 본은 또 벌면 된다」고 가족들을 진정시켰다는 것이다. 이만씨는 고통심을 하고 있

10월 유신때 신민당 울산은울주 지구당 부위원장 지낸 정계석씨도 주위에 서는 고문후유증으로 죽었을 것이라고 애기하고 있다. 당시의 지구당 위원장 崔炯佑씨에 따르면 朴正熙정권은 10월 유신이 있었던 그 이튿날 신민당지구당에서 유신을 반대하는 내용의 비라를 살포했다고 지구당 간부들을 대거 연행해 갔다. 배후로 지목된 崔씨를 비롯해 정계석, 김기홍, 이영채, 조덕규 씨 등이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한 끝에 실형을 살고 나왔다. 그러나 정계석씨만큼은 후유증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것이다.

정계석씨는 원래 폐병의 전력이 있었다. 어릴 때 누막염을 앓아 허리뼈가 시원치 않은 편이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구타, 전기고문 등을 받고 나서는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는 출소 한 뒤에 「가슴이 답답하다」는 말을 자주 했다. 김기철씨처럼 그도 고통스런 표정을 지으며 기침을 해댔고 한번씩 사망했다 하면 20분 30분 씩 계속했다.

었는데 동생 뒷바라지에 장사고 김안이 고 엉망이 된 상태였다.

어쨌든 이만씨 말마따나 김기철씨는 살아 돌아왔다. 죽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고문 후유증으로 정신 이상증세를 나타내고 있는 경우를 보자.

지난 85년 9월 4일 삼민투를 배후 조종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李乙鎬씨(32·민청련 정책실장)는 9월 24일 검찰에 송치될 무렵부터 정신분열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부인 崔貞順씨(31)에 의하면 20일 가까이 조사를 하면서 수사관들은 말도 안되는 자백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李씨는 수사관들로부터 정신적인 압박을 받아 「사람들이 개나 닭 돼지로 보인다」 「미리가 두개 달린 돼지가 나타났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지켜주니 걱정마라」는 황당한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정신이상 증세가 결정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뒤부터라고 한다. 구치소에 수감된 李씨는 10여일씩 잠을 안 자고 대변을 보지 않았다. 속옷을 마구 벗어내고 충을 추기도 했으며 안경을

마구 벗어 던지는 이상한 행동을 했다. 李씨는 결국 송치 20일 만에 서울시립 정신병원에 감정 유치되었고 11월 20일 국립정신병원으로 옮겨졌다. 7개월여 동안 다섯차례의 감정유치를 받은 끝에 李씨는 이듬해 6월 5일 정신분열증으로 최종 진단을 받고 구속 집행장지로 풀려났다.

일단 귀가는 했으나 李씨의 증세는 좀체 가라앉지 않았다. 집에 누가 오는 것 같다며 괜히 불안해 했고 전화벨 소리에 화들짝 놀라기도 했다. 수사관들이 밤늦은 시각에 찾아와 민청련이 요즘 어떻게 돌아가느냐고 묻고 가기도 했다고 崔씨는 말했다.

12월 23일 李씨는 용인정신병원에 재입원했다. 재발이 너무 잦았던 것이다. 여기서 부인 崔씨는 의사로부터 여간해서는 회복이 어렵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미 만성화된 뒤라 평생을 조심하면서 생활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는 얘기가였다. 그러나 감정유치된 때와는 달리 용인병원에서는 어느 정도 호전되는 기미를 보였고, 바깥 생활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의 권유도 있어서 3개월 만에 퇴원했다.

를 고문한 치안본부 수사관들을 걸어고 발상을 제출했으나 1심서 「증거 없다」고 기각돼 현재 항소중에 있고, 아울러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준비해 놓고 있다.

「구치소에 간첩이 있어」 신청했다

尹汝連씨(32)의 경우도 李乙鎬씨와 비슷하다. 지난 85년 가을 민청련 사건으로 1년여간 수배를 받아오던 尹씨는 86년 11월 3일 경찰에 연행되어 약 10일간 조사를 받고 11월 14일 집시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尹씨의 부인 崔경자씨(35)는 교도관들의 폭행 및 징벌방수감, 이에 항의한 단식 등으로

尹씨가 심한 편집증 등의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2월 23일로 예정되었던 선고 공판까지도 앞당겨져 지난 2월 17일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돼 현재 한양대학 정신과 병원에 입원중이다.

진단서에 나와 있는 尹씨의 병명은 「편집증태를 동반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병일을 1987년 1월말경으로 보고 있다. 의사의 소견은 3개월 입원치료에 3개월의 통원 치료가 요망되며, 만성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인 崔씨가 남편이 이상해졌다고 느낀 것은 지난 2월 9일의 구형공판에서

부인 崔씨에 의하면 李씨의 병력은 과거에도 있었다. 서울대 철학과에 재학중이던 지난 77년 교내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서에 연행돼 1주일간 고초를 당했다. 이때 정신분열증세를 일으켜 시립 정신병원에 입원, 2개월간 치료를 받고 정상을 회복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崔씨는 그러나 李씨의 이번 발병원인은 장기간의 구금과 정신적인 압박에 있다고 보고 있다. 거기에 7개월 남짓 감정유치를 받으면서 「관찰」이라는 이유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한다.

李씨는 요즘 1주일에 한번씩 용인정신병원 강남병원에서 약을 갖다 먹으면 서 직장에 다니고 있다. 정서적 안정은 찾았으나 가끔 신의 세계라든가 우주 의 변혁 등, 정신인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황당한 생각에 잠기는 것 같다고 崔씨는 얘기했다.

李씨는 재학중 「올A」를 맞을 정도로 우수한 두뇌의 소유자였다. 그러한 李씨가 정신질환자가 되면서 崔씨는 자기도 모르게 「정신병 박사」가 됐다고 쓴 웃음을 지었다. 崔씨는 85년 11월 尹씨였다. 이날 尹씨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판사님께 몇 말씀 올리겠다」면서 「서울 구치소에 간첩이 있어 신고하러 왔다」는 등 황실수설했다.

崔씨가 2월 11일과 13일 남편을 면회했을 때 피해망상증세는 현격하게 나타났다. 「소내에 간첩이 있다. 그들은 나를 죽이겠다고 수시로 헐박하고 있다. 소내 특수요원 20~30명이 구치소출과 짜고 죽이려고 하기에 나는 그들을 간첩이라고 고소했다. 그들은 타살시켜 놓고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나를 정신이상자로 몰고 있다. 나는 극히 정상이다」 「구치소에서 나를 몰고온 것으로 죽이려고 했다. 목욕을 하자고 하길래 가보니 물이 너무 뜨거웠다. 사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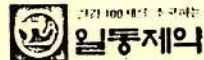
만성궤양, 재발성궤양에 큐란 1개월 단기요법

- 1일회 또는 2회 간편한 복용
- 2~3일 이내 증상소실
- 1개월 단기치료

위염, 위·십이지장궤양에



표준소매 150mg 60정 49,800원
20정 16,600원
300mg 30정 46,500원



들과 함께 목욕시키면서 나를 목졸라 죽이게 했다. 세상 사람들이 무섭다」
 崔씨는 남편의 정신분열증세가 조사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이른바 「막방」이라고 하는 정벌방에 10여일씩 갇혀 있었던 것이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었다는 것이다. 崔씨는 지난 2월 24일 교도관 5명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 내용중 막방과 관계된 부분만 일부 인용해본다.

「내가 감금되었던 방은 0.6평 정도 크기의 정벌방으로 두 팔과 두 다리를 벨으면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좁은 공간이었다. 자연 광원이라고는 티끌만치도 새어들지 않는 컴컴한 곳이며 전혀 통풍이 되지 않아 공기가 매우 탁했다. 1분만 있어도 호흡곤란을 느끼며 질식사할 것 같았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막방에 수시로 쥐들이 드나든다는 것이다.

이처럼 비위생적이고 비좁은 막방에서 나는 12월 12일부터 24일까지 지냈다. 이 기간동안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해 온 것을 느끼면서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그 와중에서도 교도관

은 오물이 가득찬 번기통을 향해 숨쉬게 하고 취침을 할 때도 번기통에 코를 대게 하고 잠시라도 이탈하면 마구 욕설과 구타를 가하였다」

尹씨의 피해망상증세는 병원에 있는 요즘도 계속되고있다. 국선변호사와 한 참 얘기를 나누는데도 부인에게 「저 사람이 누구냐고 묻기도 하고, 정해진 산책시간에도 혼자서는 안 나가려고 한다. 물러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괜히 두려워 한다고 崔씨는 말하고 있다. 수입원이 없는尹씨가 좋은 한달에 1백 40만원씩 드는 병원비 마련에도 걱정이 크다고 한다.

7년간 10번 병원에 입원

고문은 말 그대로 육체적 고통을 가해 「자백」을 얻어내는 수단이다. 「자백」이 나오지 않으면 앓을수록, 피고문자가 고문 수사관의 조작 의도에 따라 주지 않으면 앓을수록 고문은 계속되고 강도는 높아간다. 어느 고문피해자는 「더 이상 볼 게 없어서 미치겠다」고 말했다.
 아닌 게 아니라 「없는 사실이 있는

로 볼거져 나왔다. 그 다음에는 엎어놓고 치는데 얼마를 치는지 왼쪽 넓적다리에서 손바닥만한 크기의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 이들은 또 바른쪽 새끼손가락 손톱을 썩 잡아냈다. 피가 화뻘쳐 나오는데, 지금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하루도 약 안먹이면 못견디

그는 10시간 동안이나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1천CC 링게르 2대를 맞고 깨어났다는 얘기를 수사관들로부터 들었다. 그런 몸으로 서대문구치소에 수감된 白씨는 급격히 쇠약해졌다. 78kg에 달했던 다부진 체구는 45kg의

사실로 될 때까지 고문을 받다 보면, 몸이 성해 나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이다. 대한변호사 협회나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 민가협 등에서 발간된 고문공청회 자료집, 개인적 진술 등을 토대로 육체적 후유증을 앓고 있는 몇가지 사례를 살펴본다.

79년의 시국사건으로 모 기관에 끌려갔던 민통련 부의장 白기완씨는 지금까지 10번씩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白씨의 병명은 무릎관절과 고관절 척추분리증 등으로 인한 척추통증, 외상성 스트레스 증세에 따른 불면증, 합병증으로 발병한 협심증 등 10여개가 넘는다. 부인 金貞淑씨는 그때의 고문이 白씨에게 평생의 지병을 부어했다고 말하고 있다. 1년에 두세번 이상씩 고문 후유증이 재발, 입원과 퇴원은 일년에도 몇 번씩 겪어야 하는 일상적인 일이 되어 버렸다. 현재 입원중인 한대 병원측에서는 무릎 관절만 해도 1-2개월의 입원 기간이 요구되며 협심증과 불면증을 치료하는 데는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白씨는 특히 관절염과 협심증을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협심증은 심장박동의 약화로 변했다. 한때는 영하 20도의 추위가 몰아치는 치악산을 내복도 파커도 안 입고 등반했던 체력이었다. 결국 서대문구치소에서 6개월 가량 있다가 80년 5월 병보석으로 나와 병원에 입원했다.

白씨는 고문이 안겨준 병마와 싸우는 동안 두권의 시집을 썼다. 고문으로 몸이 망가지는 것이야 이쩍 수 없다 해도 정신마저 패배하고 싶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의 시 세계는 쇠약한 육신에서 나올 법한 감상적 성격의 것은 아니다. 건강했을 때 갖고 있던 생각들을 희구(希求)의 형식으로 시편속에 담아 의지만큼은 굽히지 않았다는 뜻을 내보이고 있다.

소화에 자신을 드립니다 웨스탈 포르테



소화촉진, 가스제거, 이담작용
웨스탈 포르테정
 100개입
 100원, 10,000원
 한독약품

7년 전 내란음모사건에 연루되어 모수사기관에 끌려 갔던 權赫忠씨(41)는 지금도 학생제 등 매일 10여알씩의 약을 먹고 있다. 조사를 받던 중 하북부를 체인 것이 원인이 돼 공판이식 수술을 받은 데다 신경통 고혈압 등의 후유증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55일간 있으면서 온갖 종류의 고문을 다 받아 왔다는 權씨는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굶소름 맞고는 혼절했다. 그 뒤부터는 신경계통이 마비가 되었는지 소변을 볼 때 배설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고 피가 섞인 오줌이 나왔다. 3년형을 받고 복역중 權씨는 82년 5월 석가탄신일 특사로 석방되었다가 83년 초 갑자기 졸도,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판이식 수술을 받았다.

權씨는 요즘 한달 약값으로 16만원씩 지출한다. 그나마 1백만원 가까이 되던 때에 비하면 많이 나아진 편이다. 權씨는 옛날보다 뼈마디가 약해진 것 같고 걸음을 걷다 보면 헛발음 디디는 듯 힘이 쭉 빠지는 때가 있다고 한다. 그는 하루도 약이 없이는 견디기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다. 朴燦鍾의원의 부친상 때 부산에 내려갔다가 미처 약

을 준비해가지 않아 하루만에 올라와야 했던 적도 있다.

10월유신이 단행되던 그날 밤 야당의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연행, 고문이 자행되었다. 李鍾南, 金相賢, 崔炯佑씨 등 8대 시민당의원 12명은 3년 뒤인 75년 2월 뉴서울호텔에서 고문폭로대회를 갖고 「고문정치의 종식」선언을 발표했다.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들에게 어떤 후유증이 남아있는지를 살펴보자.

15년 지나도 지팡이없이는 못 걸어

예비역 준장출신인 李世圭의원은 모기관에 끌려가 72시간 잠 안재우기, 몽둥이로 발바닥 때리기, 발가벗겨 거꾸로 매달려 물고문 등을 당했다. 고문 이유는 왜 장군의 야당에 입당했는가 하는 것과 71년 8월의 실미도 사건 진상을 어떻게 알았는가 하는 점이었다. 李의원은 수모와 고통을 못이겨 자살하려다가 의치가 부러졌다. 그는 지금도 허리를 다쳐 지팡이를 짚고 다니며 그때 부러진 의치를 고문 증거물로 간직하고 있다.

어나지 않자 송곳 등으로 발바닥을 찔러냈다.

그는 7일만에 풀려날 수 있었지만 전신구타의 후유증으로 좌측 대퇴부 골절 신경통과 우측 대퇴부 마비로 인해 한달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지금도 지팡이 없이는 보행이 불편한 데다 하루 10/20분씩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다. 또 고문 이후 2, 3년 동안 검은색 지프가 쫓아오는 듯한 환각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고 한다.

崔炯佑의원은 10월25일 모 수사기관에 끌려가자마자 구타세례를 받았다. 깨어보니 발가벗겨진채 양손과 발목이 묶여 책상 사이에 매달려 있었다. 물고문이 가해졌다. 의식을 잃었다가 눈을

金相賢의원은 72년 11월21일 2명의 기관요원에 연행되어 서울 용산구 모기관으로 끌려갔다. 밤11시부터 완전 나체상태에서 구타를 당했다. 주요 신문 내용은 金大中的 자금루트, 金大中的 군 관계조직 및 친분관계, 정부를 비판하는 이유 등이었다. 그는 3년형을 받고 2년간 복역했다.

그는 이때 눈두덩을 얻어 맞은 것이 약화되어 백내장으로 발전, 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그는 왼쪽 눈에만 콘택트렌즈를 끼고 다닌다. 요즘도 날이 꺾거나 몸의 상태가 안 좋으면 허벅지에서 무릎 아랫부분이 마비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또 왼쪽 어깨 뼈 부분을 일마나 맞았는지 대추알만한 멍울이 살처럼 볼어 있고, 한달에 두어번씩은 망치로 얻어 맞은 것 같은 통증을 느낀다고 한다.

李鍾南의원은 10월21일 모 기관으로 연행되어 8일간 조사를 받았다. 강제 로 옷을 벗겨 시멘트 바닥에 쓰러뜨리고는 무차별 구타, 실신하면 찬물을 끼얹어 정신을 들게 하고는 모포를 몸에 감아 또 때리는 식이었다. 물고문도 당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718회 정도

마보면 의사가 와서 눈을 뒤집고 협압을 재보고는 계속해도 되겠다고 했다. 동일한 고문이 여덟번이나 반복됐다. 잠을 재우지 않아 고통이 더 심했고 날씨가 추워 전신이 오들오들 떨려오는 데는 참을 수가 없었다. 그의 정쟁이에는 지금도 거뭇거뭇한 반점이 남아 있고 고문받은 계절이 돌아오면 주기적으로 통증을 느낀다고 한다. 고문을 받아 본 사람이라면 대개 다 그렇겠지만, 그는 10일간의 고문보다는 10년간의 징역살이를 택하겠다고 얘기했다.

가장 큰 고문의의 의심의 눈초리
고문은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의에 또

스 내(2층)

다뉴브

DANUBE "파스타 요리특선"

정통 이태리식 스파게티, 마카로니 요리 등 파스타의 진미를 즐겨보세요.

- 스파게티 까보나라
- 스파게티 봉고레
- 특제 해산물숲
- 새우와 마카로니 그라당
- 직접 신택하시는 트롤리 사라다 서비스

예약: 730-9911 (교) 830



코리아나호텔

몇가지 중요한 피해를 동반한다. 가령 「법정일체를 자백」해 범인으로 몰렸다 가 재판부가 고문 사실을 인정,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난 경우를 상상해 보자. 그는 법적으로든 무죄임을 입증했지만 과연 사실적으로도 결백함을 증명 받을 수 있을까. 경찰서에 갔다 왔다 하면 일단 「죄가 있는」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다. 특히 수사기관이 범인으로 단정했고 언론이 이를 크게 뒷받침한 사건일수록 「의심의 눈초리」를 떨궈내기 힘들다.

김기철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형무소에 갔다 온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다. 사람들은 되도록 그와 가까이 하기를 꺼려했고, 그도 남과 어울리기를 싫어했다. 그러나 그는 재판기록과 감방에서 써 둔 두툼한 수기만들은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있었다. 「남들이야 뭐라고 하는 이 재판 기록들은 나의 결백을 입증해 준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김기철씨 같은 피해자가 또 있다. 「원효로尹노파 피살사건」의 高淑鍾씨. 진범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고, 일부 형사 검사들은 아직도 高씨를 의심하고 있다. 더구나 경찰에서는 제수사를 포기한 지

오래라 결정적 전기(轉機)가 발생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전주시 효자동 살인사건의 金詩勳씨처럼, 또 경주당구장 살인사건의 朴虎泳 辛佰鉉 林海善씨의 경우처럼 진범이 따로 잡히면 모른다. 그렇지 않은한, 高씨는 「의혹의 눈길」을 받아가며 평생을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 고문 때문에.

1974년 긴급조치 4호 발동에 따른 「인혁당사건의 고 해재완씨 가족의 경우는 어떤가. 결백을 입증해 줄 「진범」이 있는것도 아니다. 부인 李영교씨는 지난 2월 민가협이 주최한 「고문사 해 보고회」에 나와 「천하를 이기는 힘 보다 자신을 이기는 힘을 달라」며 울며었다.

「1975년 4월 9일 대법원 판결이 난지 24시간도 안돼 남편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뒤, 우리 가족은 「간첩 집안」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다. 동네 사람들의 파가운 시선, 형사들의 감시, 담우들의 따돌림... 지긋지긋한 생활의 연속이었다. 국민학교 2학년애 다니는 딸아이는 친구들로부터 「너희 아빠 간첩이지」하는 놀림을 들어야 했고 3살 짜리 막내는 세끼에 묶여서 동네 아이

들로부터 총살당하는 놀이를 했다. 동네 어른들은 이를 보고 만류는 커녕 웃고 있었다 하니, 혀를 깨물어 만천하에 외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전 의욕도 유망도 없고 권태뿐이다. 인혁당 8명을 처형한 것이 집권 18년동안 가장 큰 실수였다고 朴대통령이 후회했다는 얘기를 尹濬善 전 대통령으로 부터 들었다. 계엄령과 긴급조치가 해제되었으 며 민청학련관련 구속자 전원이 형집행정지로 자유를 찾았으니 처형된 분들에게도 복권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불구되고 패가망신해도 보상은...

고문의 후유증에 재산상의 손실이 또한 빠질 수 없다. 「고문과 조작」이라는 이 시리즈에서 다뤄진 사건, 또는 그밖에 고문 시비가 잇따른 사건에서 거의 모든 피해자들은 엄청난 재산피해를 봐야 했다.

우선 경주당구장사건을 보자. 朴虎泳씨는 경찰 생활 16년동안 모은 돈과 전 재산을 법정투쟁 비용으로 날려 버렸다. 친지에게 벌어서 생활하다 안되었다. 「경찰서에 끌려 갔던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죄인시해 온 풍토는 단연 불식되어야 한다. 「고문을 받았다고 하라」하는 말 한마디만 있으면 무고한 사람으로 인정되는 분위기로 바뀌어야 한다. 「법정일체를 자백 받고」 일당을 채포했다고 하더라도, 고문 사실 이 드러나면 그 발표 내용을 불신해 버리는 그런 사회 풍조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또한 고문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도 중요하다. 각계각층의 인사와 의사들도 다수 참여하는 인권기구를 결성, 최소한 1차 진료라도 받을 수 있게끔 한다면 고문으로 인한 희생자 수를 줄이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고문을 추방하기 위한 국민의 연대의식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

각각됐다. 대법원의 항소는 포기했다. 「해와야 소송비용만 날릴 뿐 패소할 것」이라는 주위의 권고, 그리고 음양으로 가해지는 압력 때문이었다고 한다.

고문피해자 치료기구 설치되어야

朴鍾哲군의 죽음 이후 정부는 고문 근절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그걸 액면 그대로 믿는 국민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이 순간에도 그 어디에선가는 고문이 자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 이들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 고 주장하는 이들보다 분명 더 많다. 그 결과는 자명하다. 고문 후유증을 앓는 이들이 계속 생겨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행을 방지하는 최선의 길은 고문율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지 만, 불가능할 경우 차선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

고문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아쉬워하는 것은 사회의 적극적인 보살핌이다. 고문으로 몸이 망가지고 집안이 풍지박산 된 것만도 억울한 데 사회의 질사까지 받는다면 그것은 고문 피해자들을 두번 죽이는 거나 다름이

자 부인이 병든 몸으로 남의 식당에서 식모살이를 했다. 대법원의 무죄확정판결로 석방되어 집에 돌아오니 남은 돈 이라곤 현금 2천원뿐이었다고 한다. 차씨 역시 허약해진 몸이었지만 어린 자식들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 계란행상에까지 나섰었다. 朴海善씨는 고문후유증으로 불구가 됐고, 사업(식당) 및 폐차장(도거)의 망하다시피 됐다. 차씨 등은 국가와 金鍾寶검사를 상대로 4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해 놓고 있다.

金기철씨의 형 이만씨가 동생 뒷바라지에 장사가 엉망이 됐지만, 사정은 한입합섬 金根祖이사의 유족들에게도 마찬가지로이다. 金이사의 고문치사 사건후 2년만인 1985년 3월 28일 서울민사지방법은 金이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1억9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가족들이 임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백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들은 한일 합섬으로부터 유족보상금 명목의 보상금을 받았으니 국가가 이중으로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유족들은

은 고법에 항소했으나 「이유 없다」며

財閥의 후계자들

한국 재벌기업의 創業史와 人脈 그리고 守成의 秘訣과 財閥의 變遷을 詳述한 著書이다.

朝鮮日報 經濟部 편
신국판 32쪽
값 3,800원